◉환경부령 제987호

지하수법 시행규칙전부개정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5월 30일

환경부장관 인

지하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수 조사 결과 등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과 및 조사 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와 조사 결과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해야 한다.

제3조(지하수 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하수 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5조(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의 보고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9항 본문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관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5조제9항 단서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지하수 이용실태의 조사 결과를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10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나 인가한 날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등) 법 제5조의3제2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조사연보 및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관측연보의 발행
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기술적 지원
3. 법 제9조의2에 따른 유출지하수 이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
4.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지하수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7조(공고사항)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제8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③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9조(지하수이용시설 안내문) 영 제8조제3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이란 별표 1의 안내문을 말한다.

제10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출수(出水)장치 및 적산유량계(시간계측기 등 유량측정이 가능한 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吐出管)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지름 25밀리미터 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또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 등으로 흘러든 오염물질 및 잔재물과 굴착 시 사용된 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먹는물로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資材)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②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설치한 적산유량계를 지하수의 취수현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1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7조제6항 본문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이하 “지하수영향조사서”라 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7조의3제2항 및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2.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

③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④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영 제13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란 별표 2의 표준도를 말한다.

⑥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법 제8조제2항 본문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①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준공신고)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의 준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 다만, 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내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현장사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적산유량계를 봉인하고, 신고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부대장이 제출하는 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등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이행사항을 통보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이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하수 유출량을 말한다.

1. 지하철 역사(驛舍) 1개소: 1일 300톤
2. 터널, 전력구(電力溝) 또는 통신구(通信溝) 각 1개소: 1일 300톤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1동: 1일 30톤

③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발생현황을 신고하려는 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지하층 공사를 완료한 후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개선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행기간 등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7항의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이행기간을 2회(매회 연장기간은 처음 이행기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⑨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⑩ 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⑪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⑫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받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⑬ 특별자치시장은 법 제9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전년도의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해당 연도의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⑭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지하층 공사의 완료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유출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 집수정(물저장고) 공사 완료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지상 1층과 지하 전체 층의 바닥 슬래브 공사 완료

제16조(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굴착행위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굴착행위 신고증(변경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2.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6호서식의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사후관리 등) ① 법 제9조의5제2항 전단에 따라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의5제2항 후단에 따라 사후관리 이행의 종료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일 이내에 사후관리의 이행이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법 제9조의5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영 제14조의4제4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위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고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2호·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접객업

⑤ 영 제14조의4제5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법 제9조의6제3항에 따른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지하수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9조의7제3항에 따른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대한 지원) 법 제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 공급 취약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역

2. 가뭄 등에 취약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수자원 확보가 필요한 지역

3. 수질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주변에 대체 수원이 없는 지역

4. 그 밖에 물 공급이 취약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2조(시정명령·조치 이행의 통보 등)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시정명령 등 조치 이행완료 통보서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에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24조(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요청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 변경의 보고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④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정일 또는 변경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지목 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지적고시를 해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에는 지적도로 지적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6조(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① 영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서·유가증권을 말한다.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가 발행한 이행보증서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행한 보증서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증권 등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처음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지표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보호벽 등의 제거·절단 비용과 되메움 비용
2. 그 밖에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산정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굴착 지름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⑤ 영 제2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5년의 예치기간 경과 후 계속 예치하는 연도에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반환하고, 보증서·유가증권으로 예치된 이행보증금은 그 보증서·유가증권으로 반환해야 한다.

제27조(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① 영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이하 "국가측정망"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이하 "보조측정망"이라 한다)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3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 지

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28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9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사유
2. 지하수 오염 관측정(觀測井: 지하수 오염 감시 및 수위, 수량 등을 관측하기 위해 파놓은 관정) 설치 또는 지하수 정화 등 조치명령의 이행방법
3. 조치명령의 이행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 오염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지하수를 정화해야 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해당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⑥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의 이행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30조(지하수 정화기준) 법 제1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제31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7의 시설을 말한다.

제32조(지하수 오염 조치사항의 신고) ① 영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사고에 대한 조치사

항 등의 신고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 내용 및 조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제33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등) ① 영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등은 별표 8과 같다.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수질측정의 내용을 별지 제39호서식의 수질측정기록부에 작성하고 측정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질측정기록부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4조(오염지하수 정화기준)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9 제2호의 특정유해물질이 생활용수의 특정유해물질에 관한 수질기준 이내일 것
2. 석유계총탄화수소가 리터당 1.5밀리그램 이하일 것

② 법 제16조의3제2항 및 제16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란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35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제1항 및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이하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라 한다)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출기한까지 제출이 어려워 제출기한의 3일 전까지 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자로 하여금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천재지변, 공사의 규모·공법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이 어려워 이행기한의 3일 전까지 이행기한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6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조치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으며, 매회 1년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영 제26조의3제2항 각 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제36조(오염지하수 정화계획 변경 승인 등) 법 제16조의4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26조의4제2항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영 제26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영 제26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총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37조(측정망의 설치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측정망을 전국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지하수의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하수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측정망을 관할구역의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정망의 설치 및 측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수질검사 등) ①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세부 용도 등에 해당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를 말한다. 다만,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한 지하수는 제외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생활용수. 다만,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생활용수는 제외한다.

2.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공업용수

3.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어업용수

② 영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먹는물: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3년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이 별표 9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접수·처리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기간을 정하여 시료채취 실시 3일 전까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⑥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질검사 신청인이 보는 앞에서 시료채취를 한 후 채취한 시료를 봉인(封印)해야 하며, 별지 제41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를 작성

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6항에 따른 시료채취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서(島嶼)·산간 지역 등 수질검사 대상 지하수가 소재하는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료채취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한 후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질검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시료채취 및 봉인을 하는 공무원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또는 수질검사전문기관이 환경분야 시료채취 및 수질분석에 관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제39조(검사기관) 영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육군 각 군수지원사령부 식품검사대
2. 함대사령부 의무대
3. 전투비행단 의무대
4. 국군의학연구소

제40조(수질검사 결과통보서)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질검사전문기관은 영 제30조제5항에 따른 수질검사 기록을 별지 제43호서식의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3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시·군·구의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제41조(지하수의 수질기준) 법 제2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기준"이란 별표 9의 기준을 말한다.

제42조(출입·조사 공무원증)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등) ① 법 제22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移管)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44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등)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4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하여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에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5조(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통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처분한 내용과 제2항에 따라 다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별지 제4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에 적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

제46조(지도·감독 등) ①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지도·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협회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8조제4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은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7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 관련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48조(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 영 제39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3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은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은 별지 제56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정화업자가 주된 사무소를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제50조(토지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 영 제41조에 따른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 허가신청은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51조(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

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53조(보고·조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의 시설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사공무원은 조사 일시·목적 및 조사공무원의 소속·직급·성명 등을 별지 제59호서식의 조사방문일지에 적어 조사대상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른다.

제54조(영업실적 등의 보고) ①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보고된 자료를 취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③ 법 제34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여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의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지하수 전산망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5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 제12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등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4. 제26조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및 산정기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령 제140호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영업실적 등 보고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4조의3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등록한지 2년이 경과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5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실적 등을 해당 호에서 정한 날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짝수 연도 등록자: 2022년 12월 31일
2. 홀수 연도 등록자: 2023년 12월 31일

제4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 종류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에 따라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석유판매업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5조(케이싱덮개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케이싱덮개에 관한 설치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다.

제6조(지하수 오염 관측정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284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지점 및 구조에 관한 기준은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8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7조(밀폐식 상부보호공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476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밀폐식 상부보호공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9조(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770호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이었던 지하수 오염 관측정의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규칙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에 따른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

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부칙의 규정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이미 그 효력이 상실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제2호나목2)다)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가목3)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별표 19 제3호다목1) 본문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규칙 제6조”를 “규칙 제33조”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제9조 관련)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내문			
위치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토출관 안쪽 지름	㎜	용도(세부 용도)	
동력장치 (설치 깊이)	HP (m)	양수능력	㎥/일
소유자명		시공업체명	
관할 관청(연락처)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7조제6항 단서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고 위와 같이 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 - 지하수의 미래는 밝습니다>			

비고

1. 안내문의 크기는 300㎜(가로)×200㎜(세로) 이상으로 하고, 비・바람 등 외부 충격에 쉽게 변색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한다.
2. 안내문은 외부에서 잘 보이도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중 적절한 곳에 부착한다.

[별표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제12조제5항 관련)

1. 가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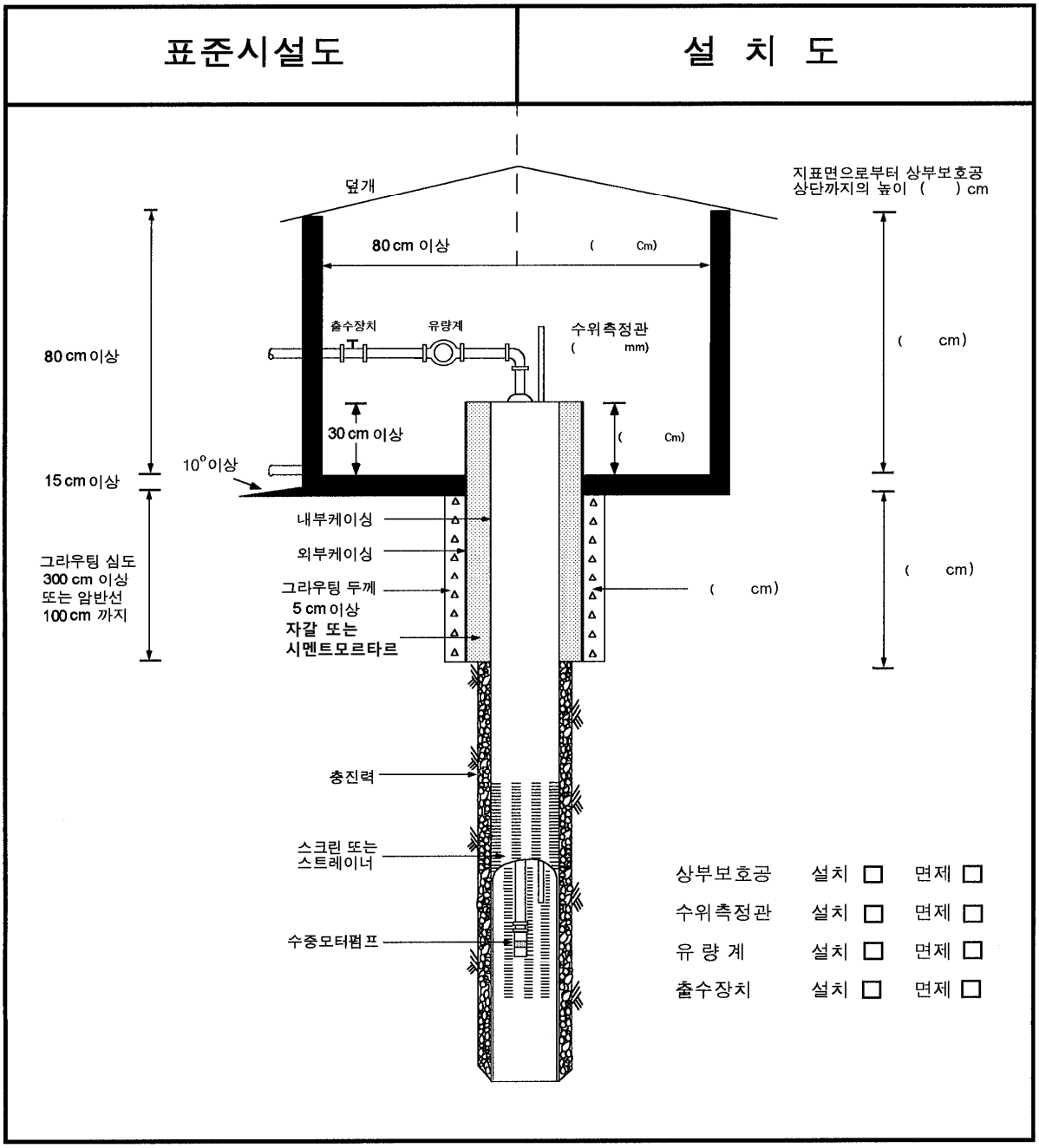

비고

1. “가형 표준도”란 스크린(screen) 또는 스트레이너(strainer: 기기 등에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2. 나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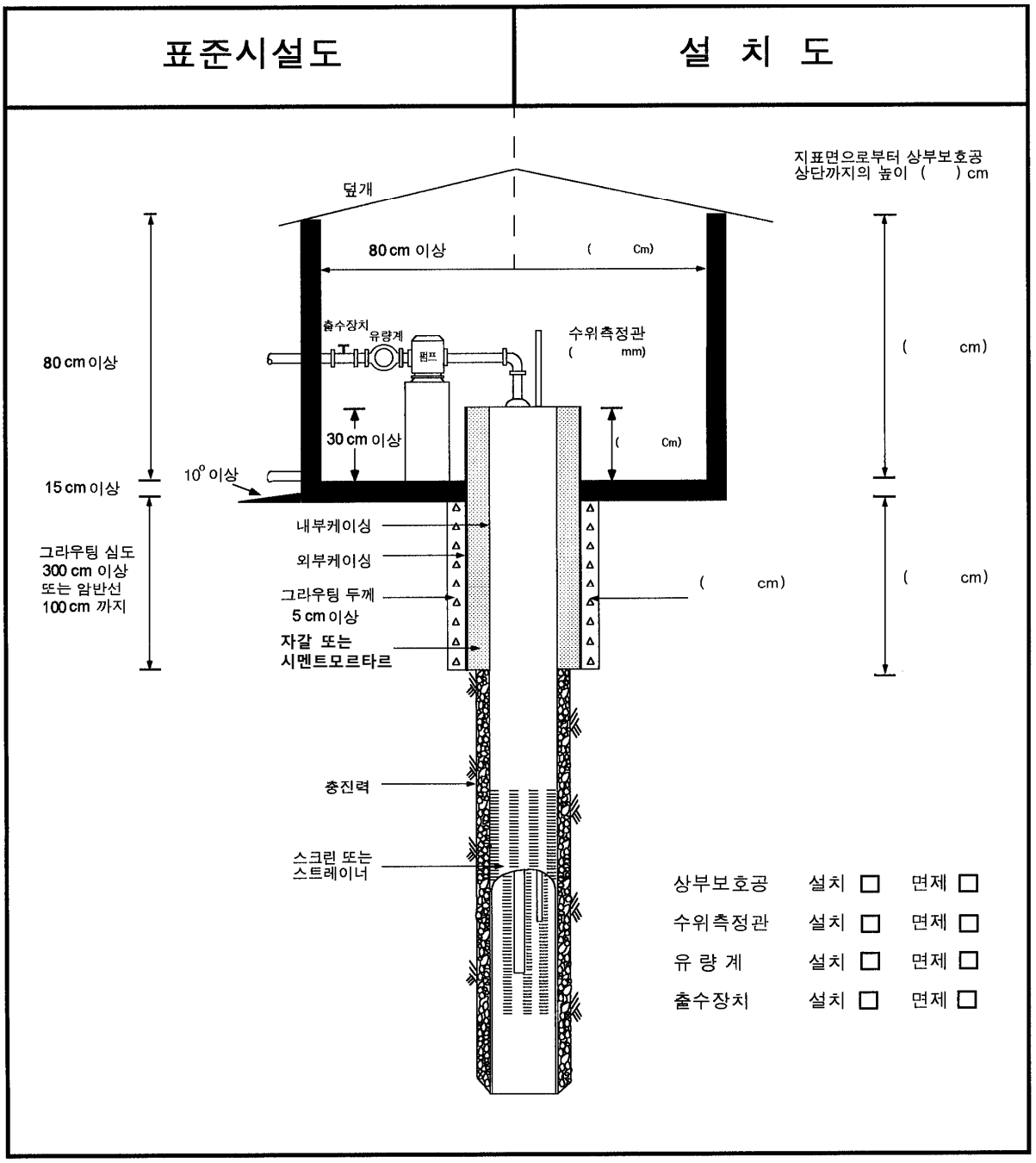

비고

1. “나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3. 다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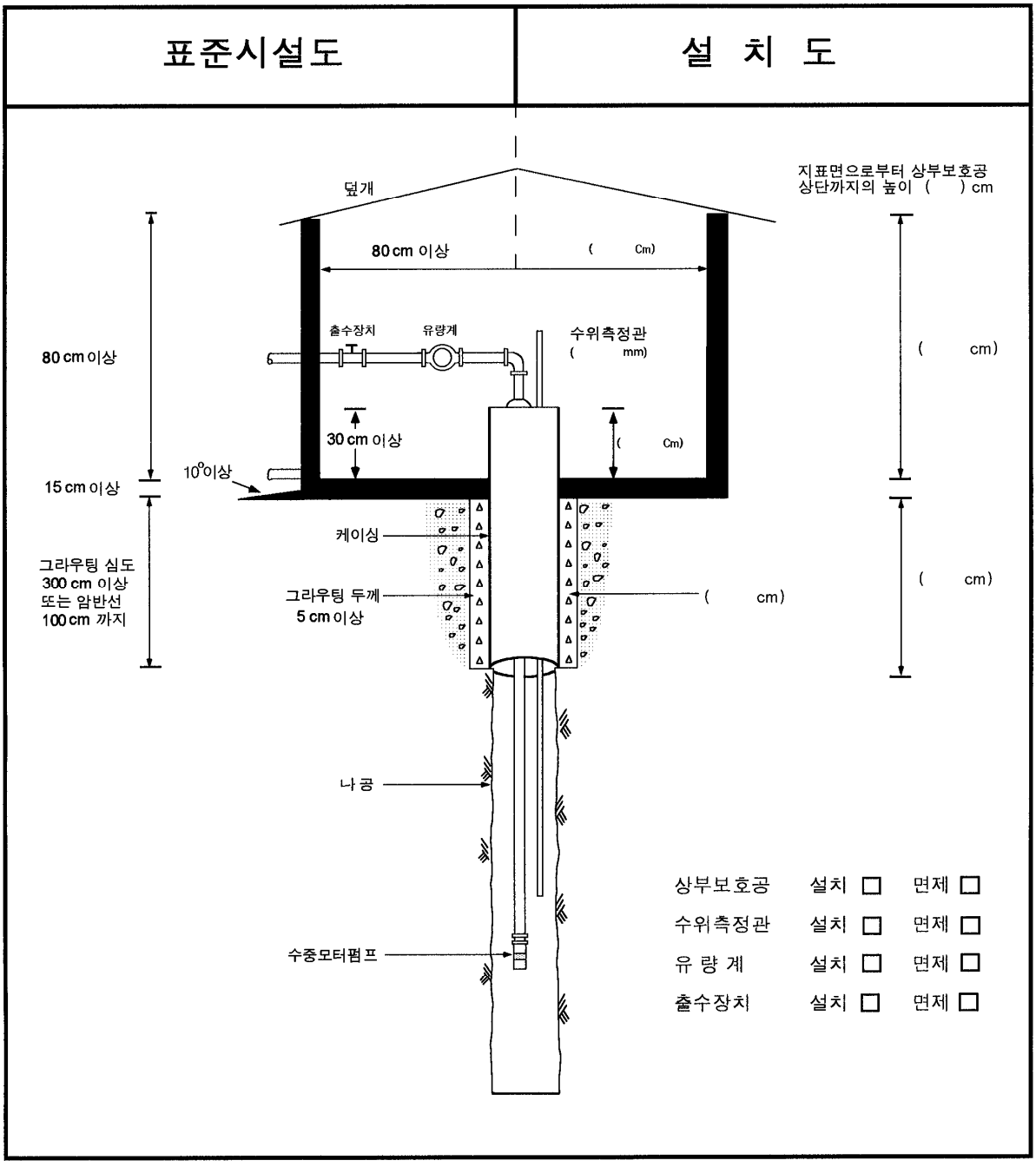

비고

1. “다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수중모터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4. 라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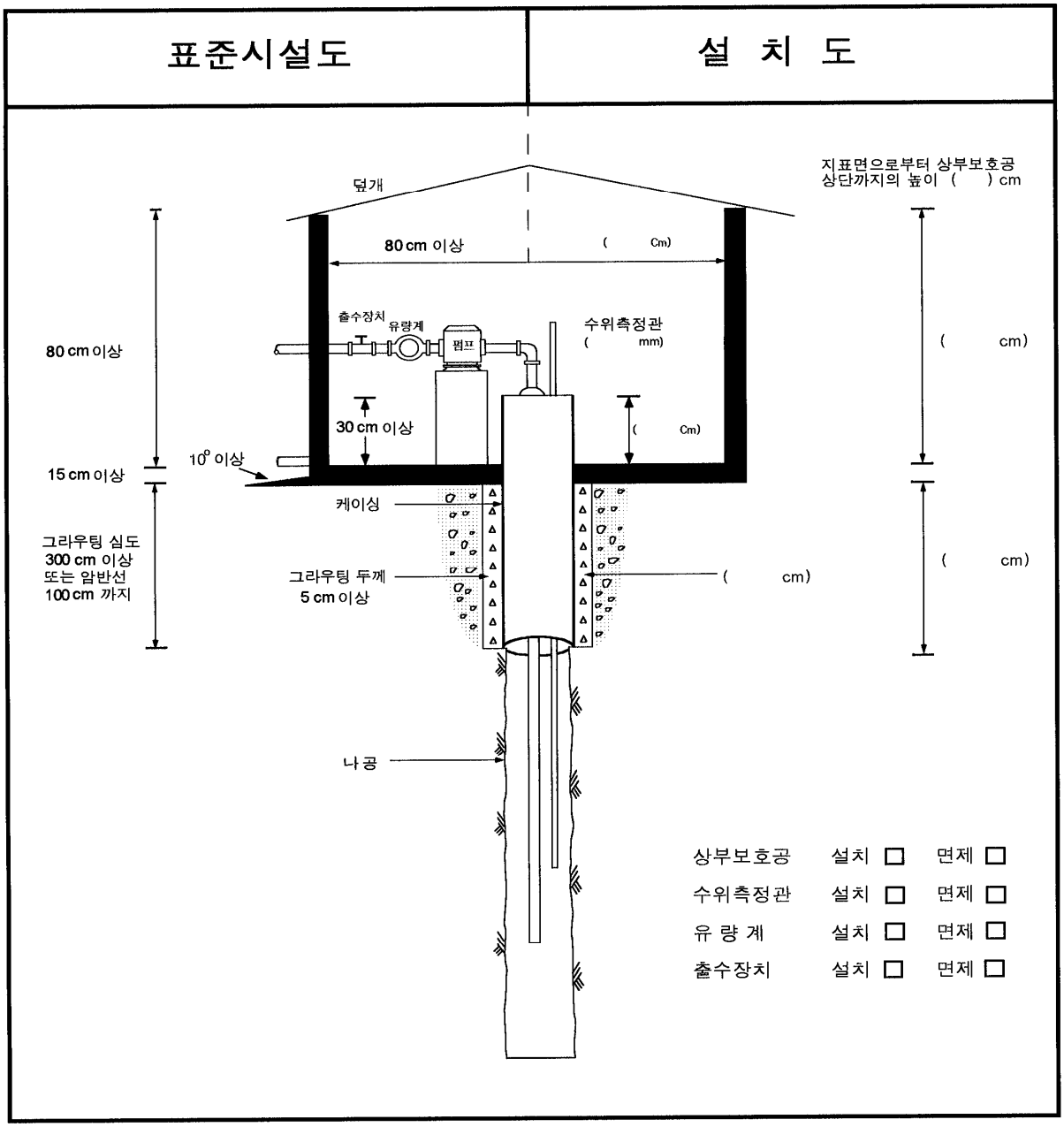

비고

1. “라형 표준도”란 스크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지 않고 지상에 모터펌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설치도에 지표면의 위치를 표시하고 지표면으로부터 상부보호공 상단까지의 높이를 적어야 한다.

5. 마형 표준도

(작성자:)

표준시설도	설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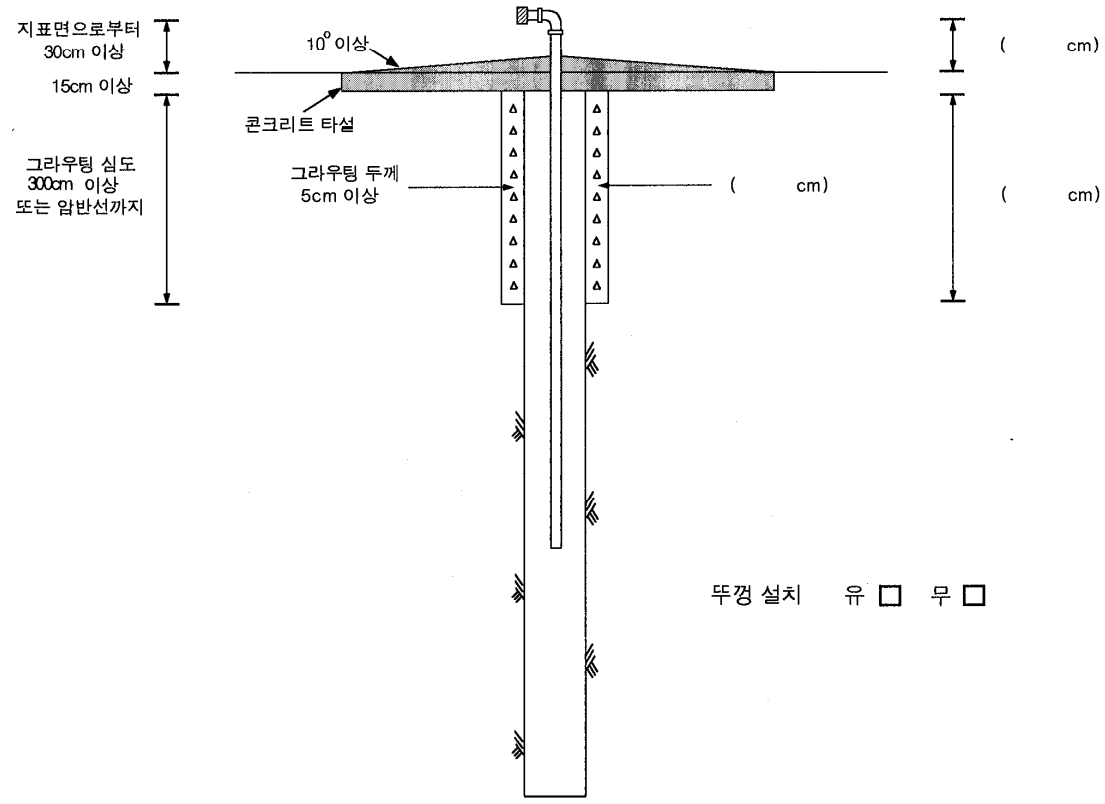

비고

1. “마형 표준도”란 정착된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않는 농어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토출관의 끝부분에 뚜껑을 씌워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암반층 이하 깊이로 굴착하는 경우에는 설치도에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6. 바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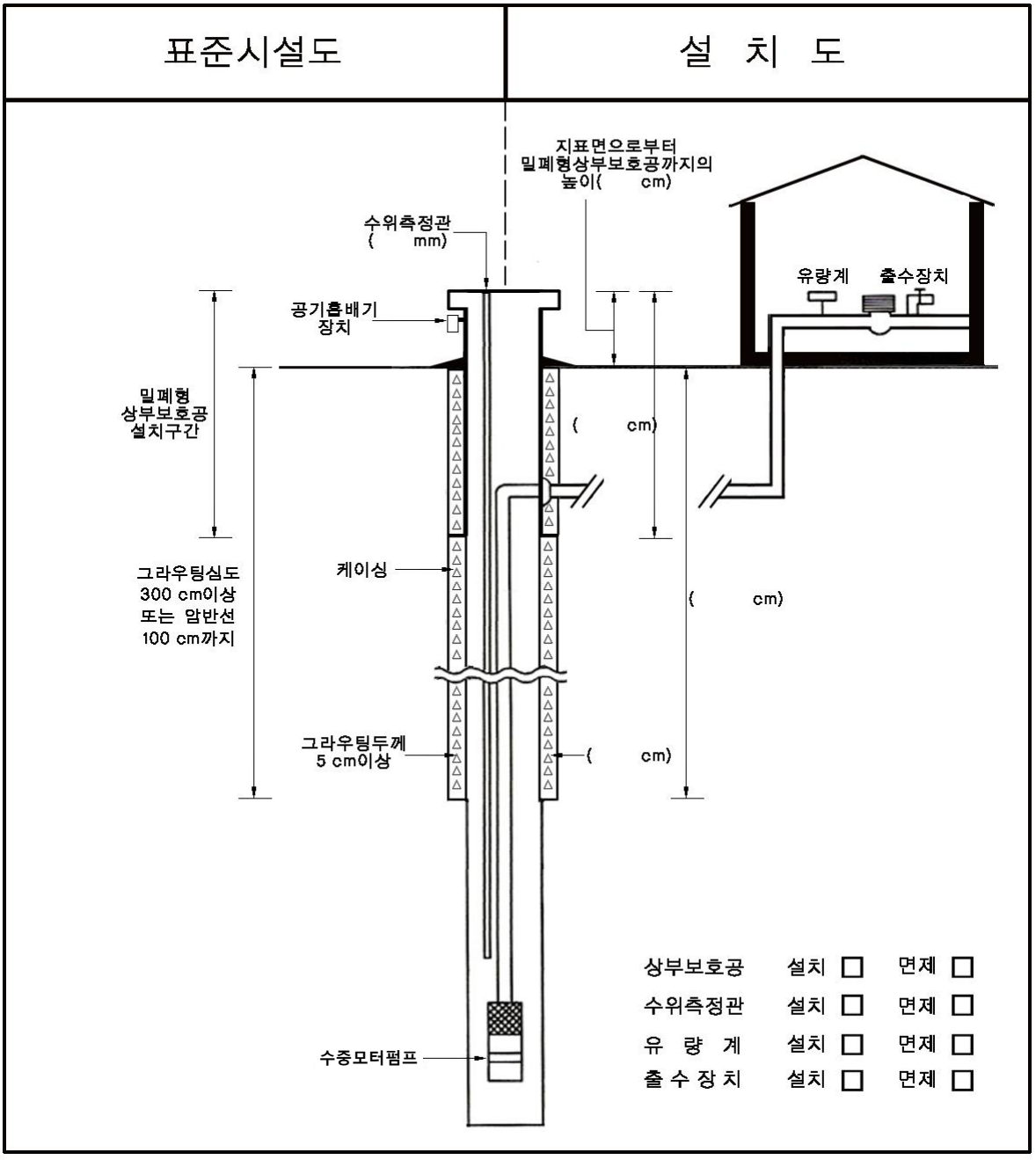

비고

1. “바형 표준도”란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별도의 인접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인접시설의 설치규격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3. 설치도에 지표면으로부터 밀폐형상부보호공까지의 높이와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4.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grouting, 균열이나 공동(空洞) 등의 틈새에 그라우트(주입액)를 주입하거나 충전(充塡)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7. 사형 표준도

(작성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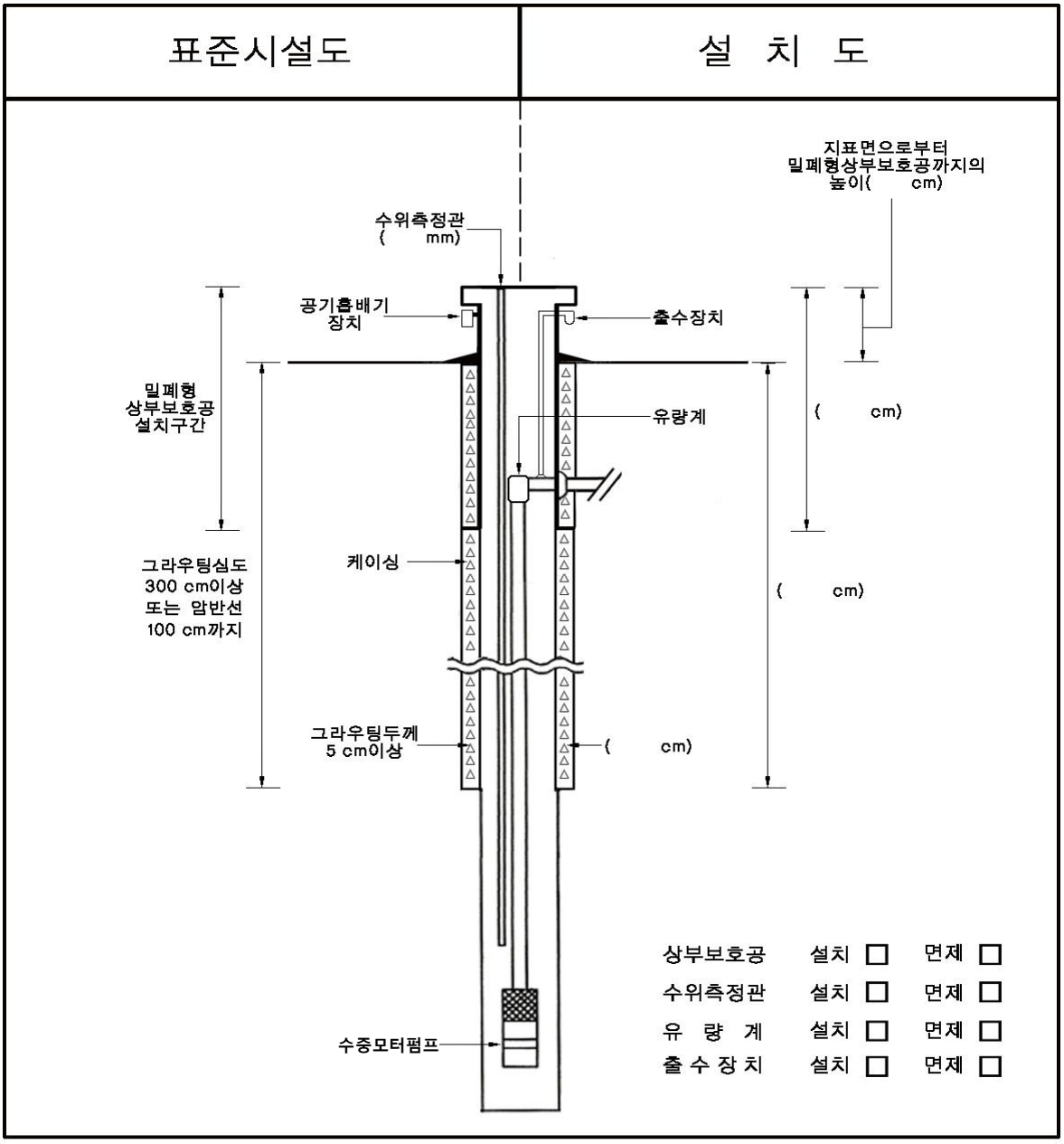

비고

1. “사형 표준도”란 밀폐형으로서 유량계, 출수장치 등을 상부보호공에 내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표준도를 말한다.
2. 설치도에 지표면으로부터 밀폐형 상부보호공까지의 높이와 암반선을 표시해야 한다.
3. 밀폐형 상부보호공 설치구간은 그라우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별표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와 검사 및 정비의 구체적인 방법(제18조제5항 관련)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

가. 지하수 취수정 안에 설치되어 있는 양수시설을 끌어올려 품목별로 상태를 점검하고 세척 등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나. 자연 수위와 굴착 깊이를 확인할 것

다.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취수정 내부의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것

라. 배출되는 지하수가 깨끗해질 때까지 청소할 것

마. 지하수와 함께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침전 용기 등을 설치하여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할 것

바. 청소가 완료된 양수시설을 끌어올리기 전과 같은 상태로 설치할 것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검사 및 정비

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반지름 10미터 이내의 주변을 정리할 것

나. 상부보호공 내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는지를 점검하고 외부에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정비할 것

다. 동력기동장치와 수중모터 간 동력전선이 절연상태(전기 또는 열이 통하지 않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것

비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후관리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그 범위와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9조 관련)

1. 시설의 설치기준

가.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1) 지하수 함양[涵養, 지표로부터 침투한 물이 대수층(帶水層)으로 공급되는 것]이 쉽고 지형경사가 완만한 지역

2) 대수층(帶水層, 지하수로 포화된 투수성이 좋은 지층·지층군 또는 지층의 일부) 하부에 불투수성 지반이 있고, 차수벽(遮水壁) 등의 설치로 지하수 저류효과가 좋은 지역

3) 차수벽 등의 설치로 상류지역 습지화되거나 하류지역 건천화(乾川化)되는 등의 위험이 낮은 지역

4)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활용하려는 용도에 적합한 수량과 수질이 확보된 지역

나. 계획취수량은 수문순환(지구상의 물의 연속적인 순환 이동과정)계가 파괴되지 않고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적정개발가능량(지하수의 함양과 유출이 평형을 이루며 지하수 장해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이용이 가능한 지하수개발량)에 손실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다. 취수시설은 주변지역의 수질오염, 수원고갈, 지반침하, 시설물 안전, 생태계 영향, 하천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할 것

라. 탁수 등 수질이 불량한 물이 취수시설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라우팅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마. 취수시설에는 출수장치 및 적산유량계 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취수현황을 파악할 것

바. 유공관은 모래나 침전물(슬러지)에 의한 막힘을 예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사. 유출지하수 발생 지역의 경우 적산유량계 등 측정장치를 설치하여 발생량 및 이용량을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2. 시설의 관리기준

가. 지하수 함양시설 또는 지하수댐 취수시설 인근과 상하류에 관측공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것

나.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지하 차수벽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보수공사를 실시할 것

다. 정기적으로 취수시설을 확인하여 양수량 감소 등 효율이 떨어진 경우에는 효율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라. 주변지역의 잠재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수질을 확인하는 등 지하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마. 유출지하수는 강우량 및 주변 지역 지하시설물 개발 정도 등에 따라 수량과 수질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하수자원확보시설이 현재의 이용 용도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별표 5]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 이용시설의 설치기준(제20조 관련)

1. 지중시설
   가. 지상의 열교환기를 순환하는 지하수를 재주입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주입정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하수를 순환시키는 데 필요한 설치자재는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재료로서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다. 지중시설의 굴착지름은 전 구간을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재주입 순환통로 등 내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정비 및 청소 등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할 것
2. 상부보호시설
   가. 지하수 냉난방에너지원의 지중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상부보호시설의 크기는 가로·세로(원형인 경우에는 안지름을 말한다) 각 15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상부보호시설의 바닥부가 지표면 아래로 80센티미터 이상 매설되도록 할 것
   나. 상부보호시설의 덮개는 지표면 위로 올라오도록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 내부에 설치하거나 지형 여건상 지표면과 동일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상부보호시설은 내부식성(耐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 훼손·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고,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할 것
3.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시설
   가.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적정 수량을 상시 확보할 것
   나. 열교환기 내에 물리적, 화학적 침전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이 양호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거나 정수설비 또는 침전물 제거를 위한 별도 장치를 설치할 것
   다. 집수정에서 열교환기로 유출지하수를 공급하는 펌프는 비상시를 대비해 예비용 펌프를 갖출 것

비고: “지중시설”이란 지하수를 냉난방에너지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하수 취수정을 말한다.

[별표 6]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 설치기준(제28조 관련)

1. 상부보호공을 설치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1) 시설은 부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시설은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한다.

3) 시설은 견고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구조로 설치하여 양수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해야 한다.

4) 케이싱(지표 하부보호벽)의 하단부는 지표면 아래 3m 이상 깊이까지 설치하며, 암반층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연암층이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아래로 1m 이상 깊게 설치해야 한다.

5) 케이싱 외부의 그라우팅 두께는 5㎝ 이상 되어야 하며, 차수용(遮水用) 재료를 사용하되, 케이싱 하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다만,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한 후 차수용 재료를 케이싱의 하단부부터 채워 올려야 한다.

6)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안에 설치하는 양수시설물은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일반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및 구조도

1) 상부보호공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보호 및 원활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크기로서 지표면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해도 지하수의 오염 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다.

2) 상부보호공의 덮개는 외부 오염물질·지표수 등의 유입을 막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과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3) 케이싱의 윗부분은 지표면 위로 30㎝ 이상 높게 설치하고, 덮개를 씌워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케이싱의 덮개에는 방충망을 갖춘 공기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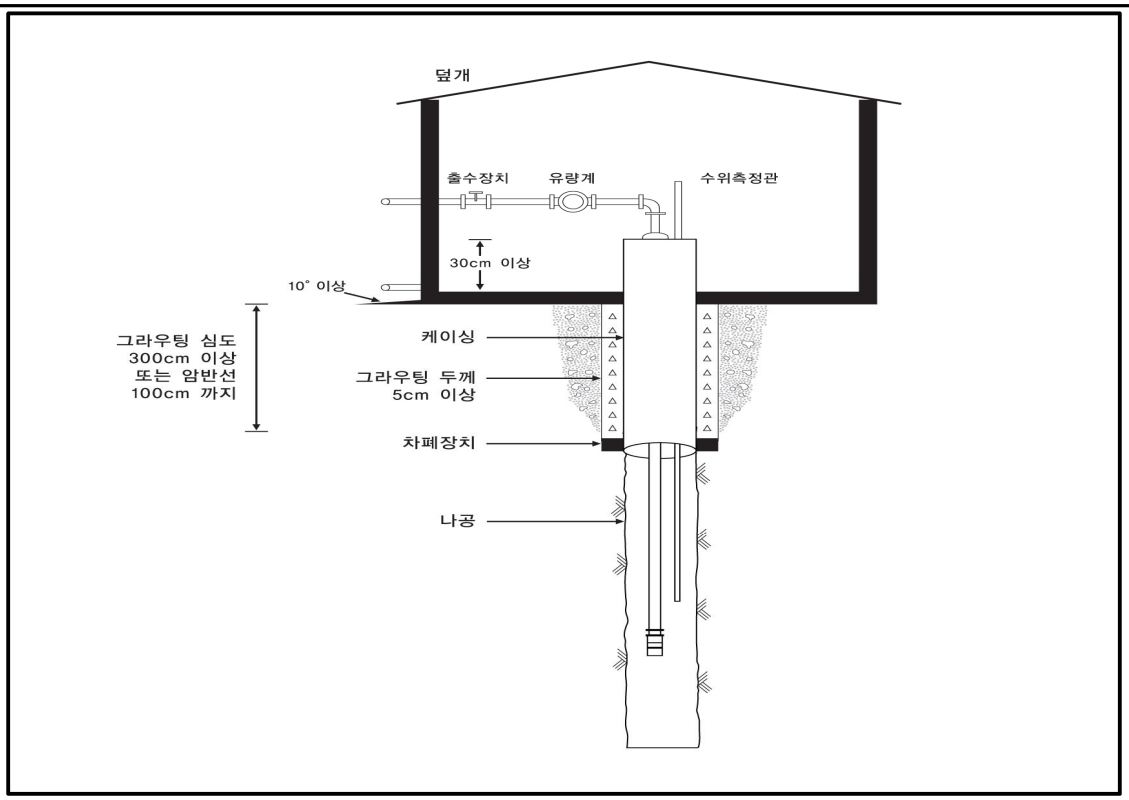

※ 차폐장치는 개발목표 깊이까지 굴착한 후 그라우팅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상부보호공의 설치기준

1) 시설의 덮개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외부 오염물질이 유입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가) 상부보호공 몸체에 대한 수밀(水密)시험 결과 5㎏/㎠ 이상의 수압을 5분간 가할 때에도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상부보호공 내부의 양수파이프 거치부에 대한 인장하중시험 결과 5,000㎏의 하중, 10㎜/min 속도로 수직인장을 가할 때에도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상부보호공 내부의 급수배관 연결부분은 조립된 상태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밀시험 결과 20㎏/㎠에서 5분간 지속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자동개폐 기능을 가진 공기출입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4) 내·외부 급수배관을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않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가. 영 제2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 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합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량·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 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굴착 지름이 100㎜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안쪽 지름이 32㎜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인 가정용 또는 국방·군사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나. 케이싱의 하단부는 제1호가목4) 및 5)에 따른다.

[별표 7]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제31조 관련)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다음의 시설

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실시명령을 받거나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비고: 지하수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지하수 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서 제외한다.

[별표 8]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설치방법 및 수질측정의 주기·방법(제33조제1항 관련)

1. 별표 7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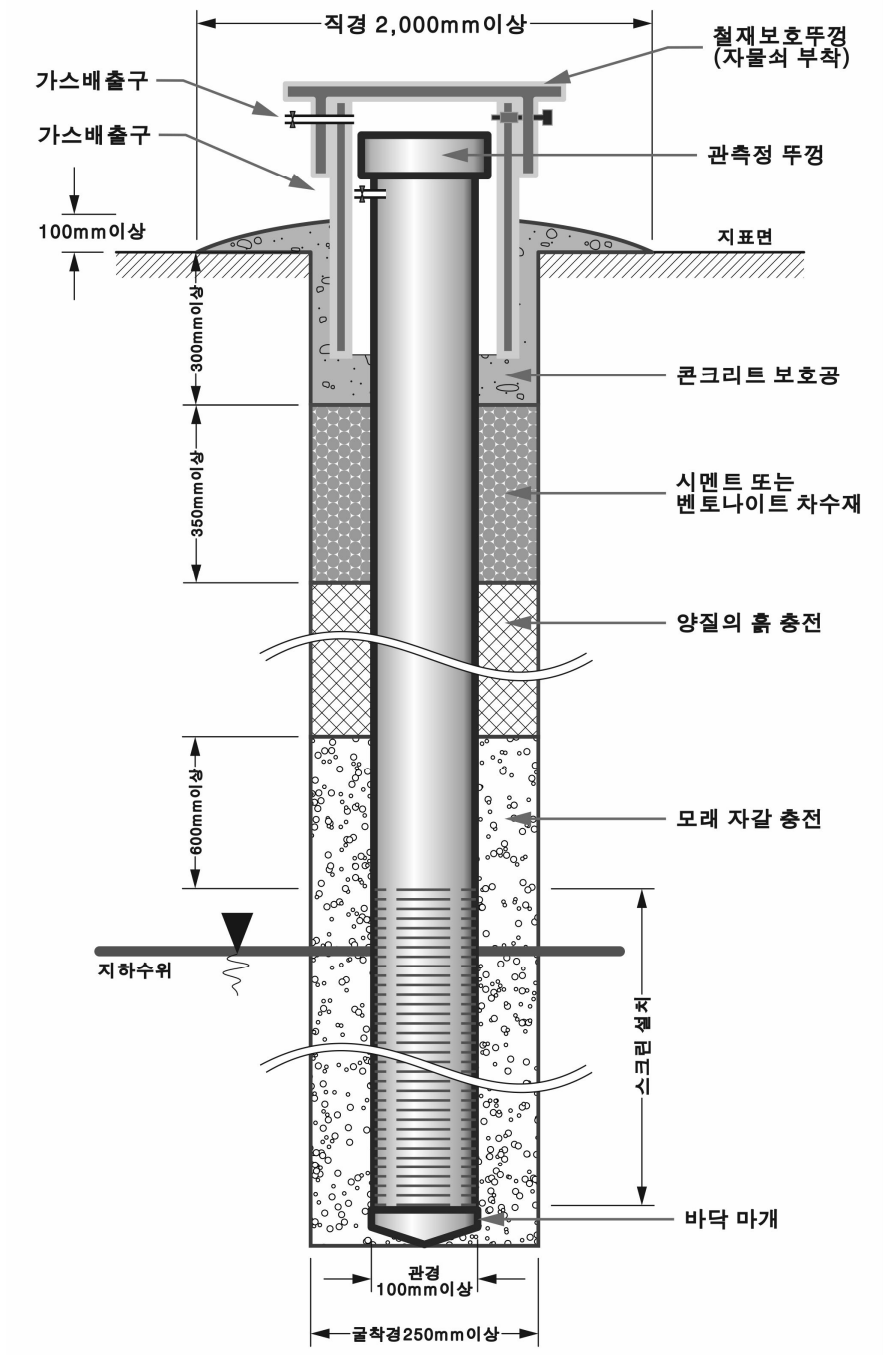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teflon: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소수성(疏水性)을 가진 합성섬유의 일종) 등의 재

질이어야 한다.

2. 콘크리트 보호공은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표면 위로 두께 100mm 이상, 반지름 1,000m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설치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2개 이상

비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性狀)을 고려하여 관측정의 수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의 수를 가감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 및 나)의 지점에는 관측정을 각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나.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1) 측정주기: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2) 측정방법

가)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별표 9 제2호에 따른 생활용수의 수질기준항목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험항목 중 해당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측정이 필요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항목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2. 별표 7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관측정의 설치방법

1) 설치구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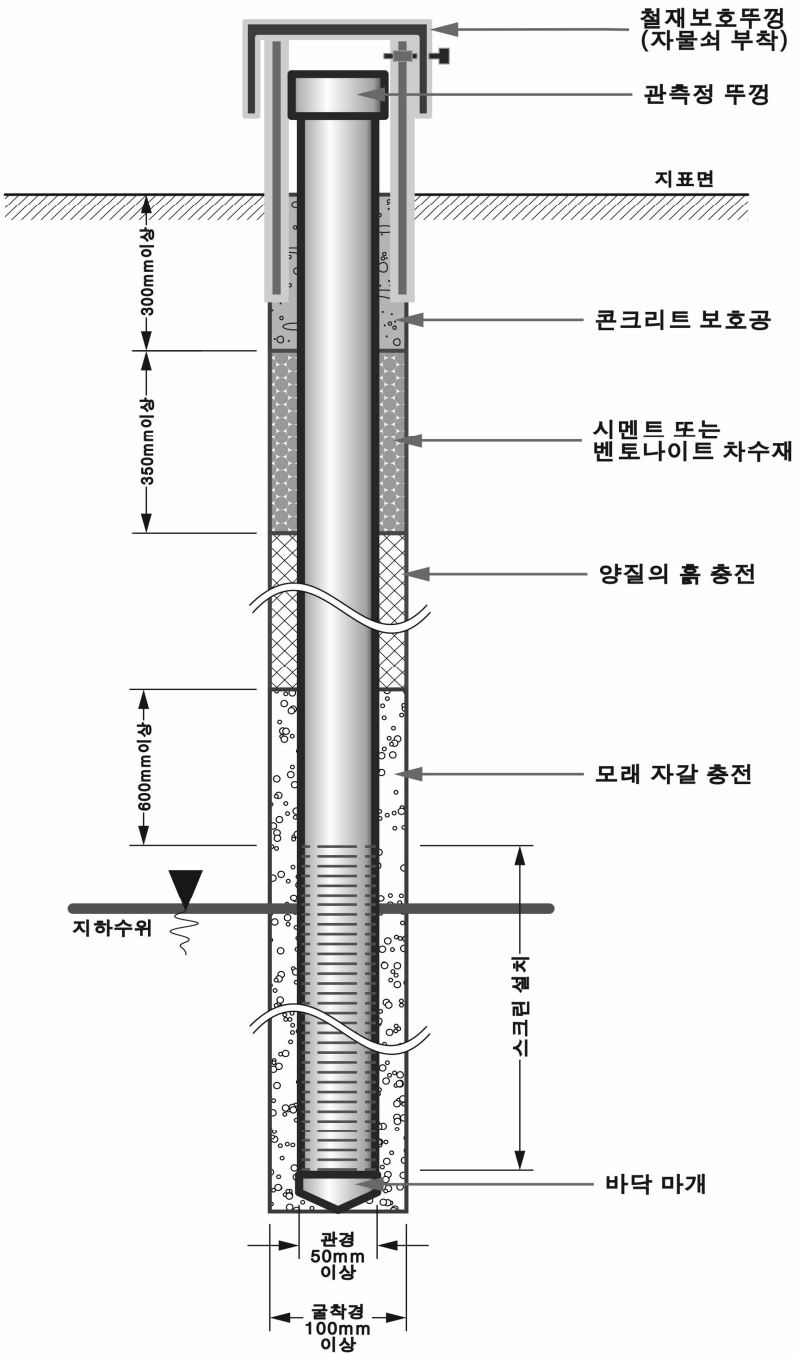

비고

1. 관측정의 재질은 유기용제 등을 포함한 중금속 등에 부식 또는 흡착되지 않고 내구성이 있는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테프론 등의 재질이어야 한다.
2. 관측정은 오염된 토양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하수오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깊이까지 설치해야 한다.
3. 관측정은 설치 현장의 여건에 따라 지중 매립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오염물질이 관측정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현장사진 및 시공도면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설치지점 및 관측정 수

설치지점	관측정 수
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상류지점으로서 오염이 발생되기 전의 대표적인 지하수 수질을 채취·분석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경계선에서 지하수 주 흐름의 하류지점으로서 오염물질이 주위 지하수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즉시 탐지할 수 있는 지점	1개 이상

비고

1.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규모, 오염물질의 성상을 고려하여 가) 또는 나)의 지점에 관측정을 설치하는 대신 해당 부지의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여 수질측정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관측정을 설치해야 하고,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측정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한까지 설치가 어렵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기한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수질측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관측정을 설치한 곳을 원상 복구할 수 있다.

나. 수질측정의 주기·방법

1) 측정주기

가)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나) 또는 다)에 따라 측정이 종료되기 전까지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실시하여 관측정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수질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나) 가)에 따른 측정 결과가 계속하여 제30조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하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이라 한다) 이내인 경우에는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반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다) 가)에 따른 측정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에도 불구하고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 없이 토양정밀조사만 실시한 경우에는 관측정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한다. 다만, 측정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을 1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지하수 정화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1년 동안 분기별 1회 이상 측정하여 그 결과가 오염지하수 정화기준 이내이면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해당 관측정의 수질측정을 종료할 수 있다.

2) 측정방법

가) 측정항목: 지하수위, 전기전도도, 수온, 수소이온농도,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명령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의 원인이 된 오염물질

나) 측정항목별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되, 해당 항목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수질검사전문기관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수질측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9]

지하수의 수질기준(제41조 관련)

1.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는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소독제 및 소독제 부산물질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

2.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mg/L)

이용목적별 / 항목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일반 오염 물질 (4개)	수소이온농도(pH)	5.8~8.5	6.0~8.5	5.0~9.0
	총대장균군	5,000 이하 (군수/100mL)	-	-
	질산성질소	20 이하	20 이하	40 이하
	염소이온	250 이하	250 이하	500 이하
특정 유해 물질 (16개)	카드뮴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비소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시안	0.01 이하	0.01 이하	0.2 이하
	수은	0.001 이하	0.001 이하	0.001 이하
	다이아지논	0.02 이하	0.02 이하	0.02 이하
	파라티온	0.06 이하	0.06 이하	0.06 이하
	페놀	0.005 이하	0.005 이하	0.01 이하
	납	0.1 이하	0.1 이하	0.2 이하
	크롬	0.05 이하	0.05 이하	0.1 이하
	트리클로로에틸렌	0.03 이하	0.03 이하	0.06 이하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 이하	0.01 이하	0.02 이하
	1.1.1-트리클로로에탄	0.15 이하	0.3 이하	0.5 이하
	벤젠	0.015 이하	-	-
	톨루엔	1 이하	-	-
	에틸벤젠	0.45 이하	-	-
	크실렌	0.75 이하	-	-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경우
   다. 해수 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0]

수수료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의 경우: 수질검사전문기관이 정하는 금액
5.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6.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7.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8. 법 제2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9. 법 제2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5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4만5천원

10. 법 제29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지하수정화업의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나.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비고: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해당 호의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환경부장관

(경유)

제 목 **지하수 조사 결과의 통보**

「지하수법」 제5조제4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조사기관 (대행기관)	조사지역 (위치)	조사기간	주요 조사 항목 및 조사 결과

붙임: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 1부.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

구분	허가 번호 (신고 번호)	위치	이용자	용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지하수 수위 (El.m)	양수능력 (㎥/일)	이용량 (㎥)	수질 검사 결과	양수설비
					깊이 (m)	지름 (㎜)					

작성 요령

1. 구분란에는 허가·신고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용도란에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온천수, 광천음료수,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수질검사 결과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수질검사의 결과에 따라 합격·불합격으로 적습니다.
4. 양수설비란에는 동력장치의 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과 토출관 안쪽 지름을 적습니다.

210㎜×297㎜[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시장·군수·구청장
(경유)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 통보**

「지하수법」 제5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인가, 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일련번호	근거법률	구분	허가(인가, 신고) 연월일	이용자	위치	시설설치 내용					비고
						깊이(m)	지름(㎜)	양수능력(㎥/일)	토출관 안쪽 지름(㎜)	동력장치(HP)	

※ 구분란에는 허가, 인가 또는 신고를 적습니다.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 ] 허가 [ ]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영향 조사기관	기관명 / 대표자 /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 대표자 / 등록번호	
	주소(대표자) (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에 따라, 위과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 ]허가, [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첨부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5.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3만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만7천원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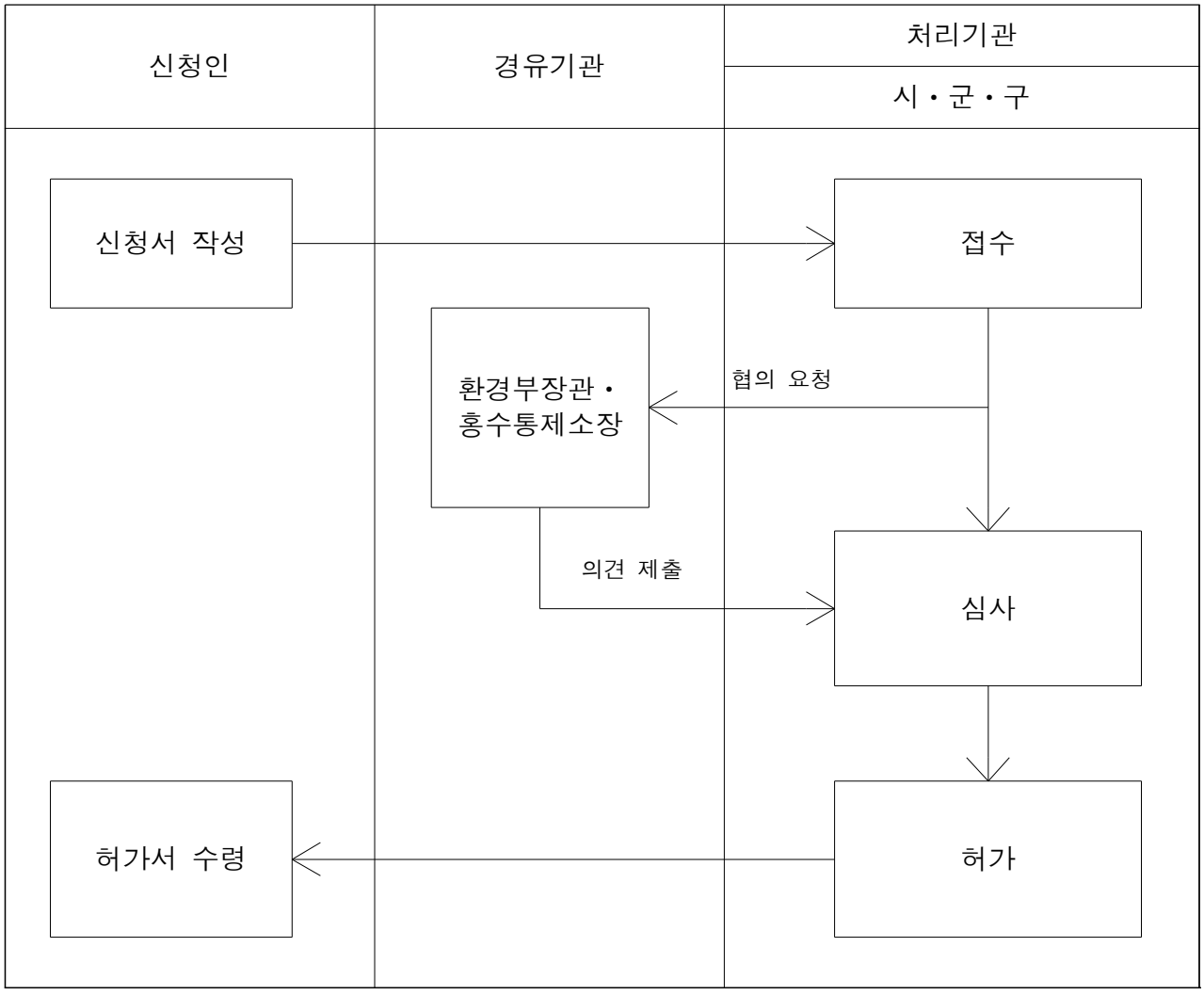

※ 환경부장관·홍수통제소장과의 협의는 하천구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상복구계획서

[선택] 불용공 유형 분류 중 해당되는 관정에 표시

구 분	소 형		대 형		재래식
충적층	[ ] 유형1		[ ] 유형2		[ ] 유형3
암반층	케이싱 인발(引拔) 가능	[ ] 유형4	전구간 되메움	[ ] 유형6	-
	케이싱 인발 불가	[ ] 유형5	부 분 되메움	[ ] 유형7	-

유형별 원상복구 되메움 순서 및 모식도(유형1 ~ 유형7)

① [유형1] 충적층 소형우물

- 충적층 소형우물의 일반적 되메움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케이싱 제거	• 유압잭키 등,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케이싱을 뽑아냄
되메움 작업	• 공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 되게 하거나 주변 흙으로 다짐하며 되메움
주 변 정 리	• 지표면을 평탄하게 하고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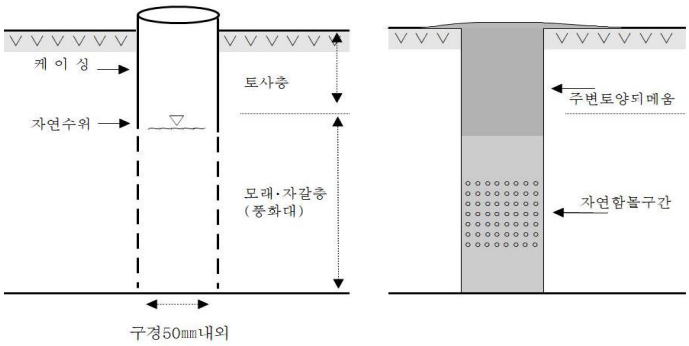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2 [유형2] 충적층 대형우물

– 충적층 대형우물의 일반적 되메움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케이싱 제거	• 유압재키 등 장비나 도구를 이용하여 케이싱 인발 제거 • 공 내부가 오염된 경우 물을 양수하고 우물소독
되메움 작업	• 공 내부가 자연적으로 함몰 되게 하거나 • 자연함몰이 안될 때 대수층구간은 깨끗한 모래, 자갈로 채우고 상부는 점토 또는 주변 흙으로 되메움 • 지표면 최상부는 주변 흙으로 직경60cm 높이 20cm 정도의 돔형 다짐
주 변 정 리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작업 중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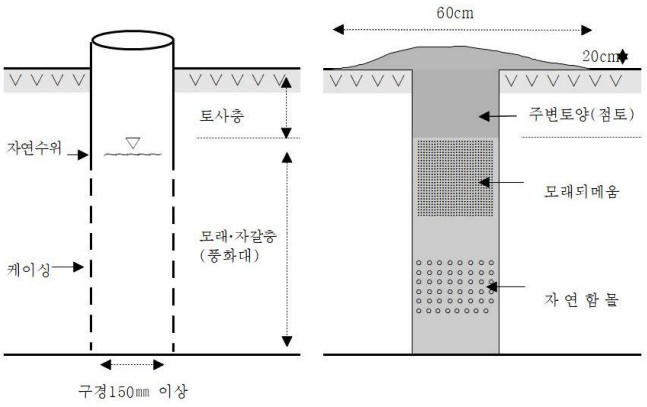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3 [유형3] 재래식 우물

－충적층 재래식 우물의 일반적 되메움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구경, 지하수위, 우물내 퇴적물조사
불용공내 이물질 제거 및 우물소독	• 우물 내 이물질 완전 제거 • 우물이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된 물을 양수한 후 우물소독 실시 • 우물 보호공 제거
투수성재료 주입	• 대수층 구간에 모래 및 자갈로 충진 • 모래·자갈 충진 상부구간에 점토 또는 주변 토양으로 다짐하며 되메움 • 지표 상부구간에는 주변 토양으로 직경 1.5m, 높이 30cm 정도의 돔형으로 되메움
주변정리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우물 보호공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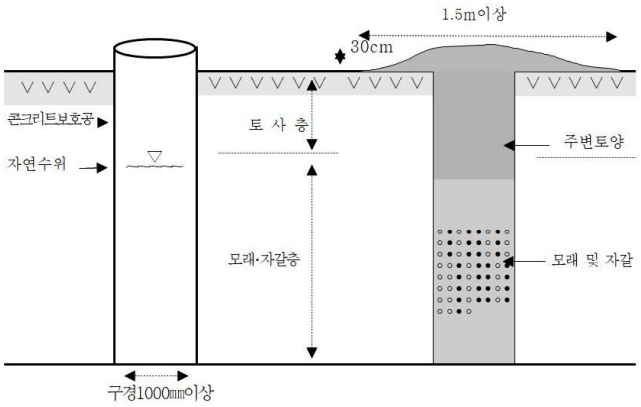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4 [유형4] 암반층 소형우물(케이싱 인발 가능)

– 케이싱 인발 제거시 되메움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불용공내 이물질 제거	• 수중펌프 등 공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완전히 제거
불투수성재료 주입	• 암반 대수층구간(또는 케이싱 미설치 하부구간)에 불투수성 재료 주입(시멘트, 몰탈, 벤토나이트 등)
케이싱 제거	• 유압재키 등 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 인발
지표부 표면처리	• 층적층의 공 내부가 자연 함몰되게 하거나 주변 흙으로 되메움
주변정리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작업 중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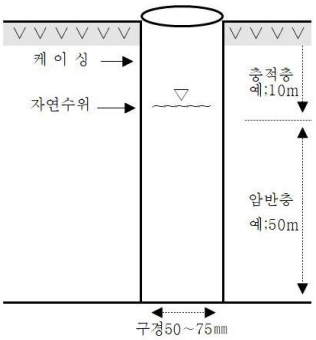

【원상복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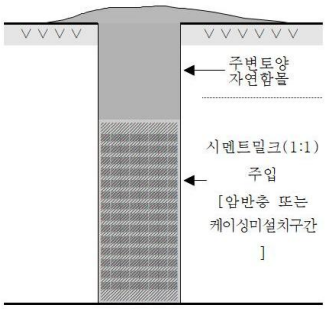

【원상복구 후】

⑤ [유형5] 암반층 소형우물(케이싱 인발 불가)

– 케이싱 인발 불가시 되메움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 등 작업여건과 오염물질 유입 여부 점검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을 조사
불용공내 이물질 제거	• 수중펌프 등 공내에 이물질이 있는 경우 완전히 제거
지표부 터파기	• 터파기 심도는 1m로 하며, 현장여건과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불투수성재료 주입	• 공내에 불투수성재료 주입(시멘트 밀크, 몰탈, 벤토나이트 등)
케이싱 절단 제거	• 지표에서 1m까지 케이싱을 절단하여 제거
지표부 표면처리	• 터파기구간 하부는 시멘트몰탈을 타설하고 상부 나머지 구간은 주변 흙으로 되메움 • 시멘트몰탈 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를 1:2로 하고 타설 두께는 20cm정도로 함
주변정리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작업 중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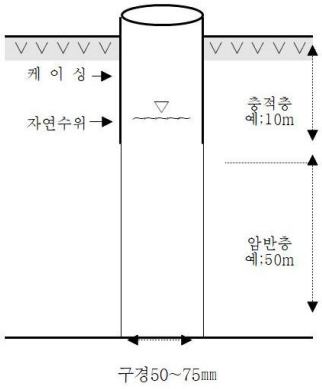

【원상복구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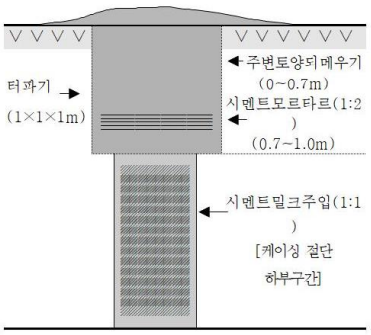

【원상복구 후】

[6] [유형6] 암반층 대형우물 (전구간 되메움)

- 전구간 되메움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과 지질조건 검토 • 불용공 주위 오염원의 존재여부 검토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구경,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 조사
불용공내 이물질제거 및 우물소독	• 수중모터펌프 등 양수시설과 기타 이물질 제거 • 불용공 내부가 오염되었을 경우 우물청소 및 소독 실시
투수성재료주입	• 투수성재료는 깨끗한 모래, 자갈 주입 • 주입구간은 암반대수층 또는 케이싱 하부 구간 • 주입방법은 주입관을 공내에 삽입하고 콤프레샤를 사용하여 주입 • 재료주입시 주입심도 20m마다 주입된 심도를 측정 • 브릿지 현상 발생여부와 다짐상태 점검
상부보호공시설 제거	•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로 터파기 실시 (심도 대략 1~1.5m정도)
불투수성재료 주입	• 투수성재료를 주입한 상부구간에서 터파기구간 또는 지표면 하부 1m까지 불투수성재료 주입 • 불투수성 재료 : 시멘트밀크, 시멘트몰탈, 벤토나이트, 점토 등 • 주입방법 : 재료 주입은 구경 50㎜내외의 그라우트파이프 또는 호스를 하부에 내려서 바닥에서부터 주입
케이싱 인발 제거	• 유압잭, 체인브럭, 포크레인 등 장비 이용 케이싱 인발 제거 • 케이싱 인발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표에서 1m까지 케이싱 절단 제거
지표부 표면처리	• 불투수성재료 주입과 케이싱 인발 작업이 끝난후에 지표부 표면처리작업 실시 • 터파기한 경우 하부구간은 시멘트몰탈을 타설하고 상부 나머지 구간은 주변 토양으로 다짐하면서 되메움 (시멘트몰탈의 배합비는 시멘트와 모래를 1:2로 하고 타설 두께는 30cm 정도)
주변정리	•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주변정리 • 작업 중 발생한 케이싱, 우물자재 등 폐자재는 운반하여 폐기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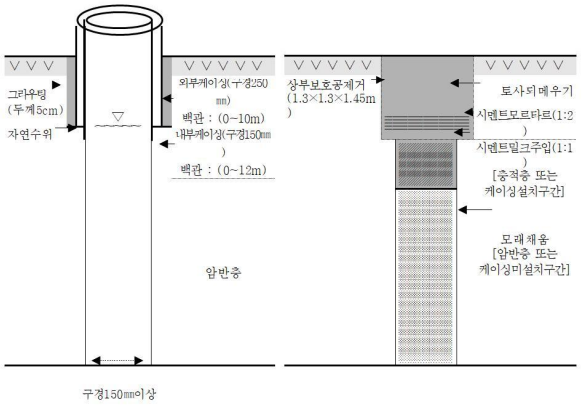

【원상복구 전】 【원상복구 후】

⑦ [유형7] 암반층 대형우물 (부분 되메움)

－부분 되메움(심도 300m 이상) 순서

주변환경검토	• 주변환경과 지질조건 검토 • 불용공 주위 오염원의 존재여부 검토
불용공 제원조사	• 우물의 심도, 구경, 지하수위, 케이싱의 구경, 재질 등 조사
불용공내 이물질 제거	• 수중모터펌프 등 양수시설과 기타 이물질 제거
공내상태점검	• 공내검층 및 TV촬영으로 공내상태 점검
상부보호공시설 제거	• 상부보호공의 헐기 및 부수기로 터파기 실시(심도는 대략 1~1.5m정도)
패커 또는 플러그 설치	• 공내 TV촬영 또는 검층결과를 토대로 암반대수층의 상부구간 중 균열이 없는 신선한 암반구간에 패커(parker) 또는 플러그(plug) 설치
불투수성재료 주입	• 패커 또는 플러그 상부에 모래와 자갈을 1-2m정도 주입후 불투수성재료(시멘트밀크, 시멘트몰탈) 주입 • 재료주입은 구경 50㎜내외의 그라우트파이프를 하부에 내려서 바닥부터 주입
케이싱 인발 제거	• 유압잭, 체인브럭,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케이싱 인발 제거 • 케이싱 인발이 불가능 할 경우는 지표에서 1m까지 케이싱 절단 제거
지표부 표면처리	• 불투수성재료 주입과 케이싱 인발 작업이 끝난 후후에 지표부 표면처리작업 실시 • 터파기 하부구간은 시멘트몰탈을 타설하고 상부나머지 구간은 주변 흙으로 다짐하면서 되메움
주변정리	• 주변환경과 어울리게 주변정리 불용공작업 중에 발생한 케이싱 등 폐자재를 운반하여 폐기처분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앞쪽)

허가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 [ ]허가서 [ ]변경허가서 [ ]유효기간 연장허가서 [ ]행위허가서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mm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조건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8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

[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의 ([ ]허가, [ ]변경허가, [ ]유효기간 연장허가, [ ]행위허가)를 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지하수개발・이용자 유의사항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경우 연장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후에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허가받은 사항 중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 및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허가일)	제 호(년 월 일)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첨부서류	1.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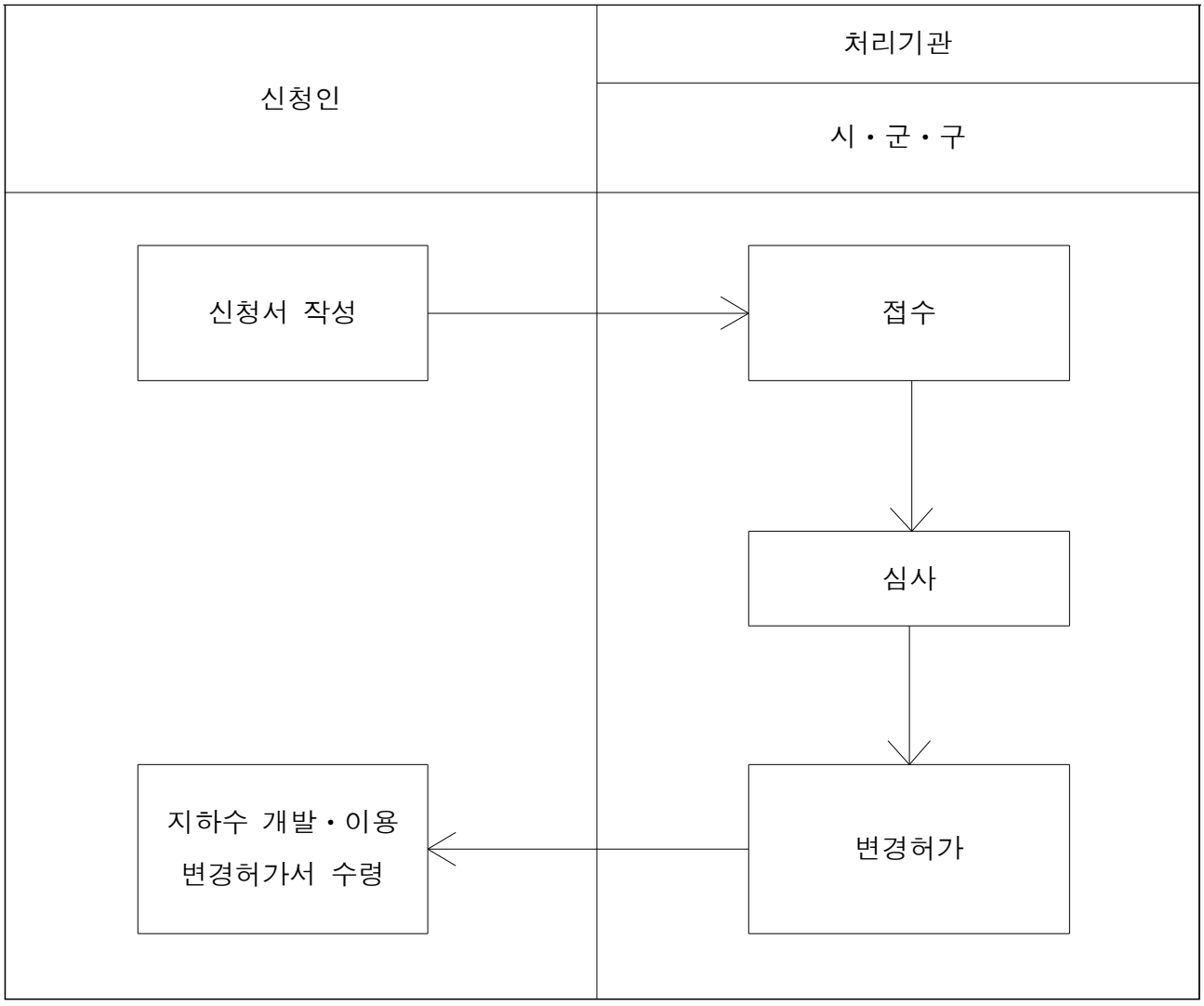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명세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 설치 명세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명세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깊이 m	양수능력 ㎥/일	
허가번호 (허가일)	제 호(년 월 일)		
처음 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유효기간	
신청 사유			

「지하수법」 제7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 다만,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를 재주입하는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1만7천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1만5천원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1만5천원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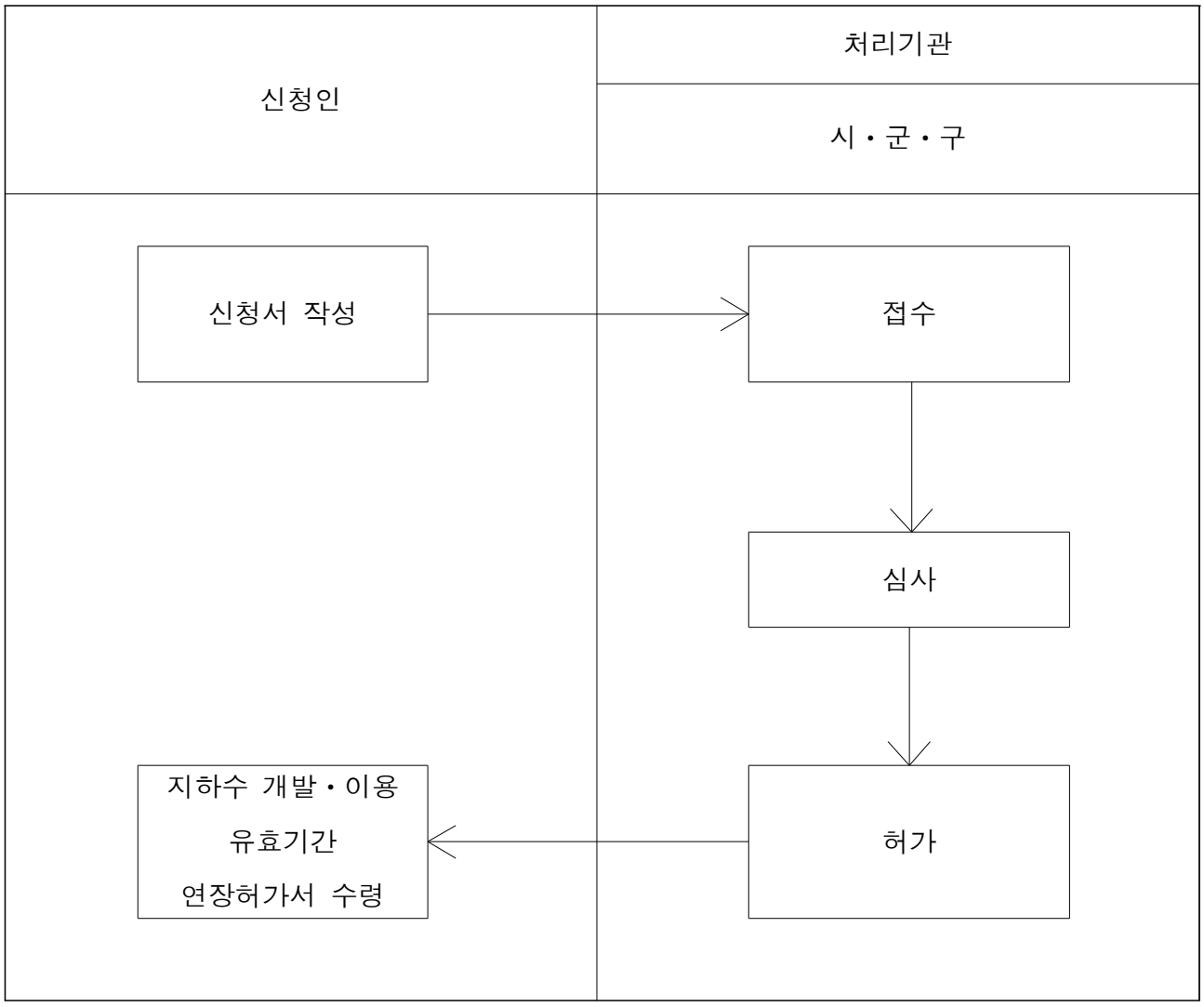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공사 예정 시공업체	업체명	대표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취수계획량과 양수능력을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4.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같은 내용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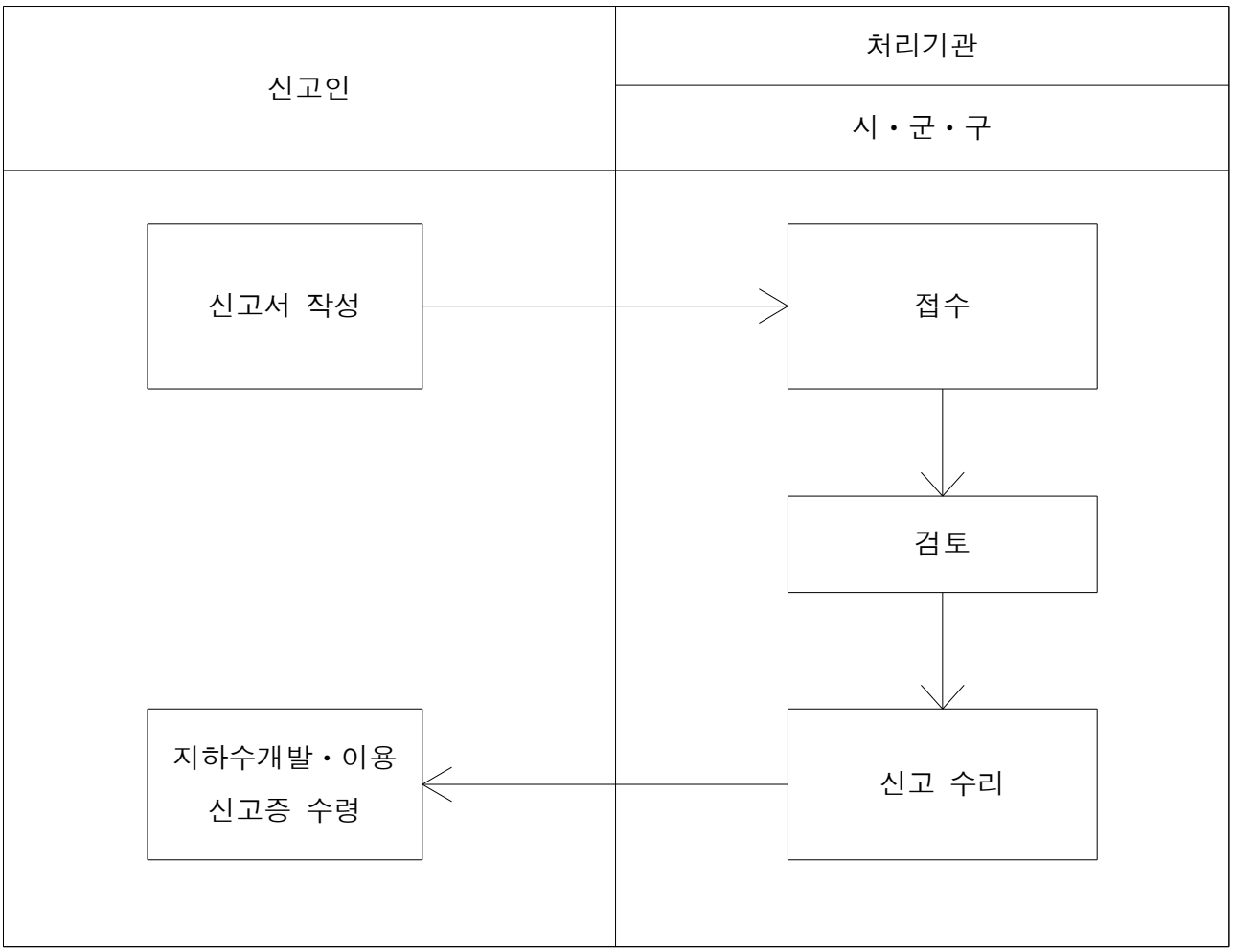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 [ ]신고증 [ ]변경신고증

(앞쪽)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사항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펌프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신고(변경신고) 내용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단서·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지하수개발·이용자 유의사항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 이용하는 경우 변경신고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한 사항 중 지하수개발·이용 용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한 사항의 변경으로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이 허가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 수질보전 등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정비를 하는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는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 「지하수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지 않거나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치		신고번호 및 신고 연월일	신고 제 호 년 월 일

변경 내용	개발・이용 용도
	개발・이용 시설
변경 사유	

「지하수법」 제8조제2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 ([ ] 용도, [ ] 시설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신고 수리	→	변경신고증 수령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 ]시정명령 등 조치 [ ]개선명령 이행완료 통보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다만,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경우에는 10일

통보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통보 내용	시설명
	이행완료 내용
	이행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주소)	대표자 성명(전화번호)

[ ]「지하수법」 제8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지하수법」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

[ ]「지하수법」 제10조제3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에 따라 이행사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통보인 제출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의 통보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통보인 제출서류	1. 시정명령 등 조치 또는 개선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법」 제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9항에 따른 개선명령 이행완료의 통보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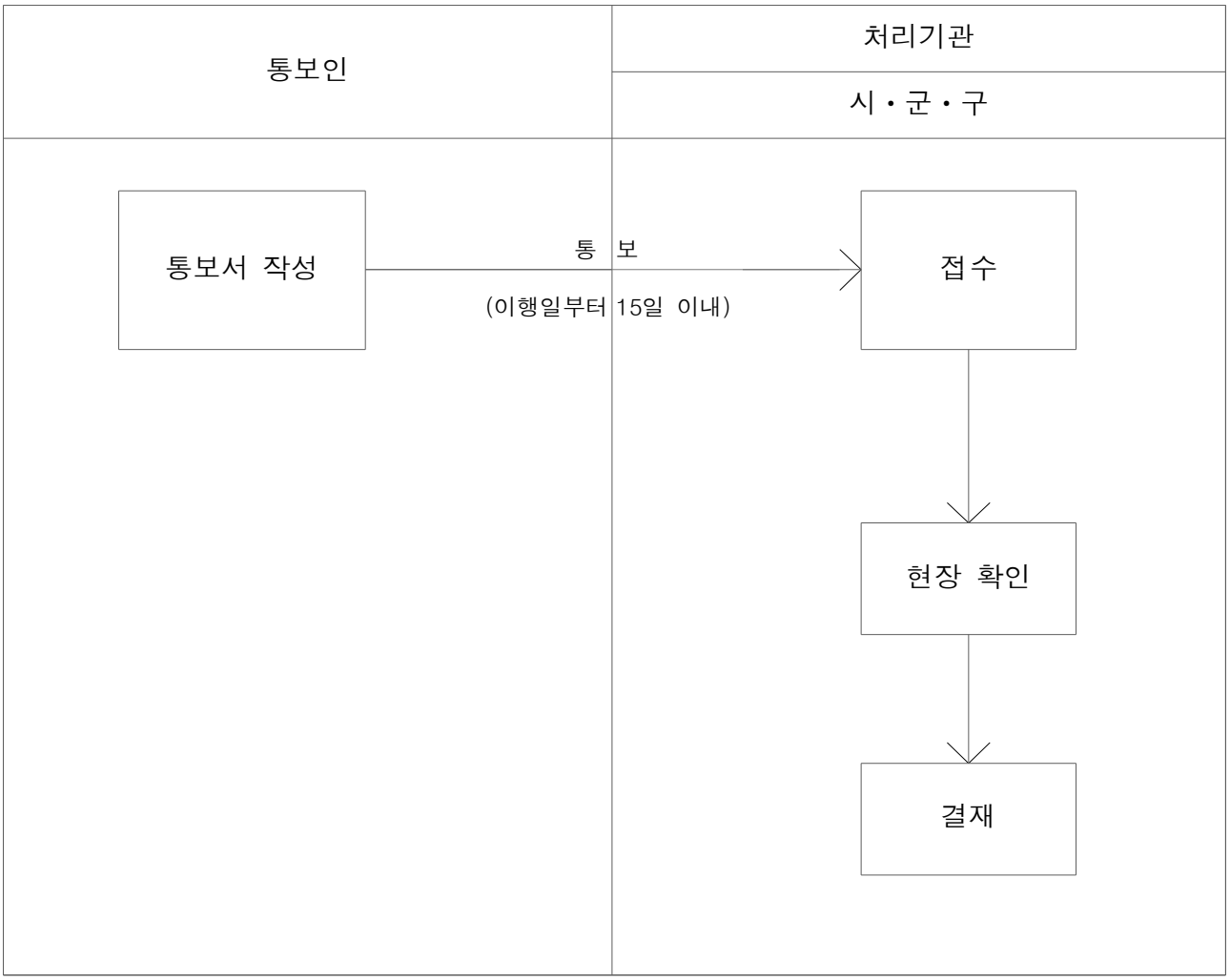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준공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출수장치	적산유량계	수위측정관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오염방지시설 설치 내용	상부보호공	지표하부보호벽	
	그라우팅 두께		cm
준공 내용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등록번호(전화번호)
	착공일	준공일	
	공사 내용(설비공사, 오염방지시설 등)		

「지하수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인 첨부서류	1. 준공시설도 2. 「지하수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전문검사기관이 작성한 수질검사서(준공신고일 이전 최근 6개월 안에 지하수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수질검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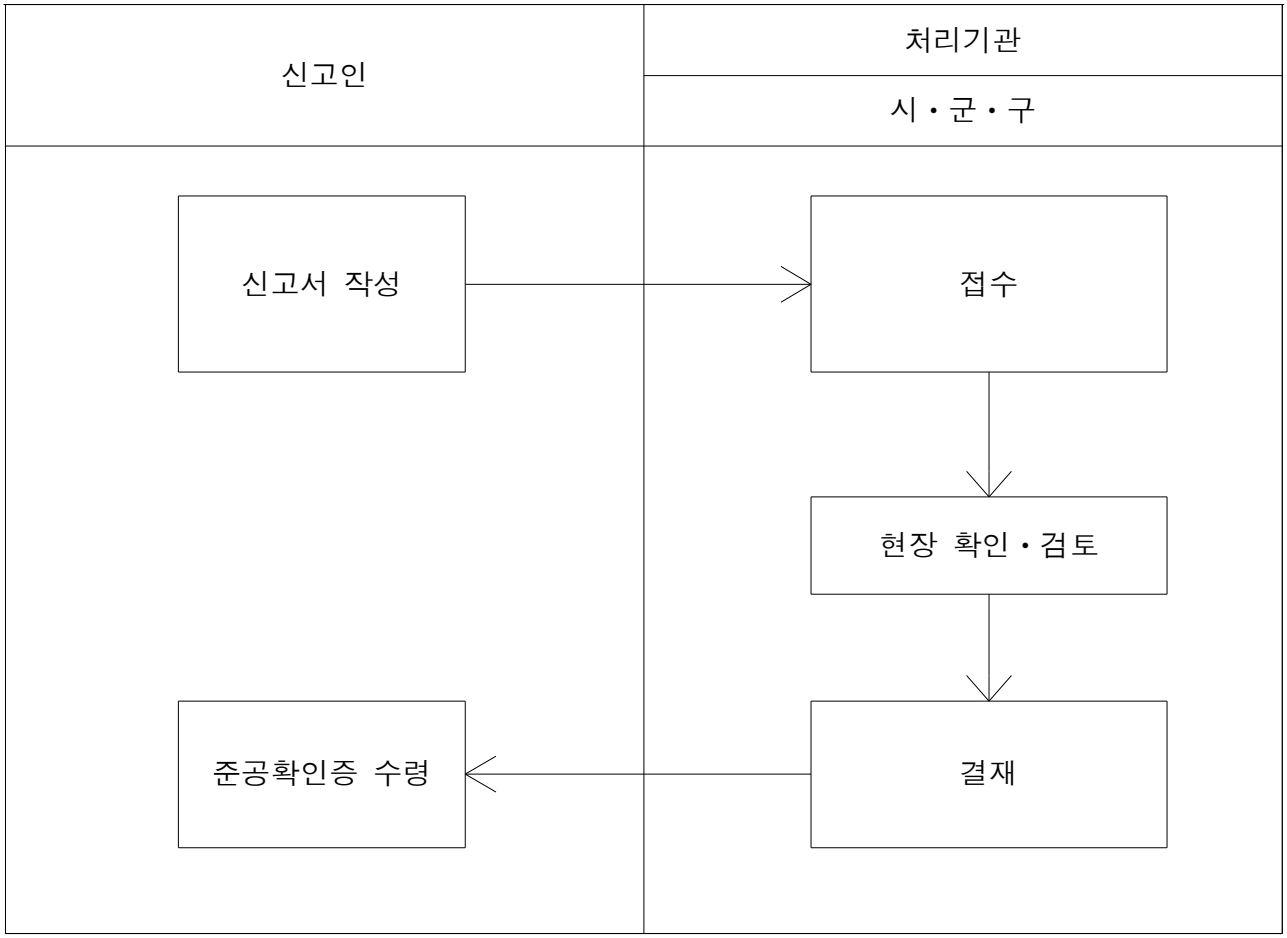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제 호

준공확인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 내용	위치		
	좌표(경도, 위도) ,	용도(세부 용도)	먹는물 사용 여부
시설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mm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그 밖의 사항			

「지하수법」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의 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지하수 유출량 ㎥/일	지하수 유출 위치

시설공사 현황	착공일	준공예정일
	시공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시공업체 주소 (전화번호:)	
	공사 위치(주소)	
	공사 개요	
	시설 구분 [ ] 건축물 [ ] 지하철 역사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지하수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2. 공사평면도, 터널노선도 등 시설물의 위치 및 지하수의 유출 위치를 표시한 도면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신고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지하수 유출량 ㎥/일	지하수의 유출 위치
시설공사 현황	시공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시공업체 주소 (전화번호:)	
	공사 위치(주소)	
	시설 구분 [ ] 건축물 [ ] 지하철 역사 [ ] 터널 [ ] 전력구 [ ] 통신구 [ ] 기타( )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이용계획 내용	지하수의 유출 위치	이용용도
	지하수 유출량 ㎥/일	이용계획량 ㎥/일
	시설 구분 □ 건축물 □ 지하철 역사 □ 터널 □ 전력구 □ 통신구 □ 기타( )	

시설공사 내용	시공업체명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대표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공사개요		

「지하수법」 제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유출지하수의 유량측정자료 및 수질검사서 2.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신고증

신고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유출 위치		
지하수 유출량 ㎥/일		이용계획량 ㎥/일
이용용도		

「지하수법」 제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9호서식]

(　　)(특별자치시·시·군·구)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1. 전년도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구분		유출지하수 현황						
		합계	건축물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기타
(　　)시	개소수(개소)							
	유출량(㎥/일)							
(　　)군	개소수(개소)							
	유출량(㎥/일)							
(　　)구	개소수(개소)							
	유출량(㎥/일)							

2. 해당 연도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구분			유출지하수 현황							유출지하수 이용현황						
			합계	건축물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기타	합계	건축물	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기타
(　)시·군·구	전년도	개소수(개소)														
		유출/이용량(㎥/일)														
	누계	개소수(개소)														
		유출/이용량(㎥/일)														

「지하수법」 제9조의2제5항 본문·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2항·제13항에 따라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mm

개발·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1호서식]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위치		
허가(신고)일 및 허가(신고)번호	년 월 일, 제 호	
시설 설치 내용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개발·이용 종료일 년 월 일		종료 사유

「지하수법」 제9조의3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굴착행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내용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	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굴착 지름	굴착 목적
				m	㎜	
	착공 예정일 년 월 일			원상복구 예정일 년 월 일		
	예정 시공업체명			대표자(주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굴착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굴착행위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원상복구계획서 3.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3호서식]

굴착행위 [ ]굴착 깊이 [ ]굴착 지름 [ ]원상복구예정일 [ ]시공업체명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변경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변경([ ]굴착 깊이 변경 [ ]굴착지름 변경 [ ]원상복구예정일 변경 [ ]시공업체명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굴착행위 [ ]신고증 [ ]변경신고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m)	굴착 지름(㎜)	굴착목적	원상복구 예정일

[ ]신고

「지하수법」 제9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굴착행위의 [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굴착행위 종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굴착행위 내용

신고번호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 신고번호에는 해당 굴착행위 (변경)신고증의 「순번」을 적습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굴착행위의 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원상복구계획서(다만, 굴착 신고시 제출한 원상복구계획에 변동이 없거나,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굴착한 토지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굴착행위 종료신고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굴착행위 내용

순번	위치/좌표(경도, 위도)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원상복구 예정일

「지하수법」 제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6항에 따라 굴착행위의 종료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사후관리 이행내용	허가(신고)번호	
	구분 ( ) 청소 ( ) 검사·정비	이행 예정일
	예정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관리의 이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 수리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8호서식]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사후관리 이행내용	구분 ( ) 청소, ( ) 검사·정비		시행일	
	제원(諸元) 확인	※ 단순 검사·정비인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연 수위 m	굴착 깊이 m	동력장치 HP / 설치 깊이 m
	시공업체		사업자등록번호(전화번호)	

「지하수법」 제9조의5제2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관리 이행종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후관리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청소인 경우에는 공정별로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증

신고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신고)번호	
사후관리 이행내용	청소	
	검사·정비	

「지하수법」 제9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후관리 이행종료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피승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 시설	허가(신고)번호 제 호	허가(신고)일 년 월 일
	위치 (전화번호:)	
승계 사유		

「지하수법」 제11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양도·양수, 상속, 합병 등 승계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신고번호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자 권리·의무 승계신고증

승계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 시설	허가(신고)번호 제 호	허가(신고)일 년 월 일
	위치 (전화번호:)	
승계 사유		

「지하수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경유)

제 목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요청**

「지하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지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구분		
최초	위치	
	면적	
변경	위치	
	면적	
사유		
효과		

붙임 1.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적은 서류

2. 지정 또는 지정 변경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지정하거나 지정 변경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4. 해당 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 변경에 따른 효과 등을 적은 서류. 끝.

발신기관의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3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환경부장관
(경유)
제 목 **지하수보전구역 지정(지정 변경) 보고**

「지하수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구분		지정(변경지정)
지정(지정 변경)내용	처음	위치	
		면적	
	변경	위치	
		면적	
	지정(지정 변경)일		. . .
	지정(지정 변경) 사유		
	그 밖의 사항(효과 등)		

끝.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내용	행위 내용	시설명	
		목적	
		면적	
	착공일 (준공일)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지하수법」 제1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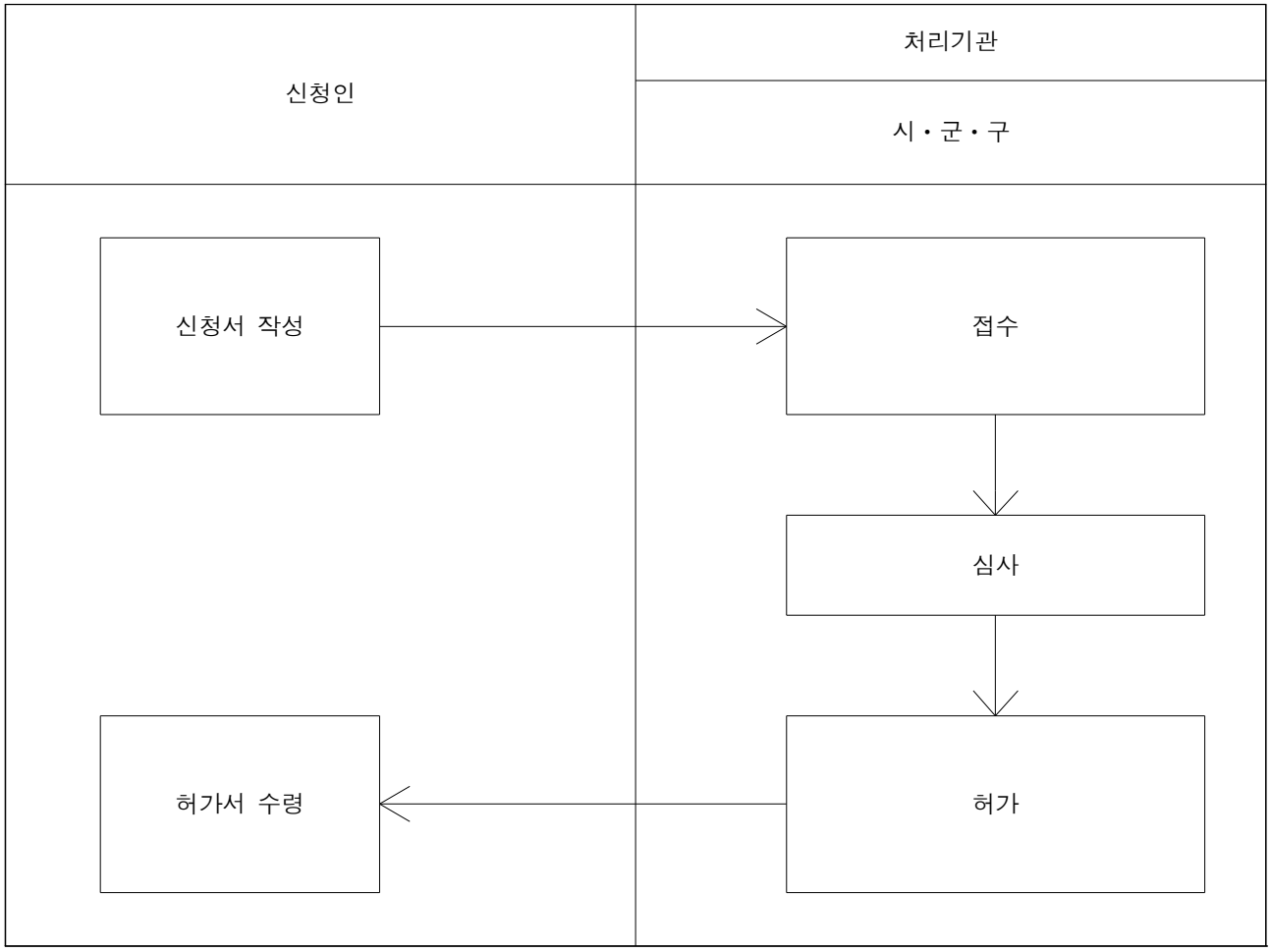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원상복구 예외인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개발·이용시설 설치 내용	위치		
	굴착 깊이 m	굴착 지름 ㎜	취수계획량 ㎥/일

양수설비 내용	동력장치 HP	토출관 안쪽 지름 ㎜
	설치 깊이 m	양수능력 ㎥/일

개발·이용기간 . . ~ . .	개발·이용 용도
오염방지시설 내용	
원상복구 예외인정 사유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상복구의 예외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국가측정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조측정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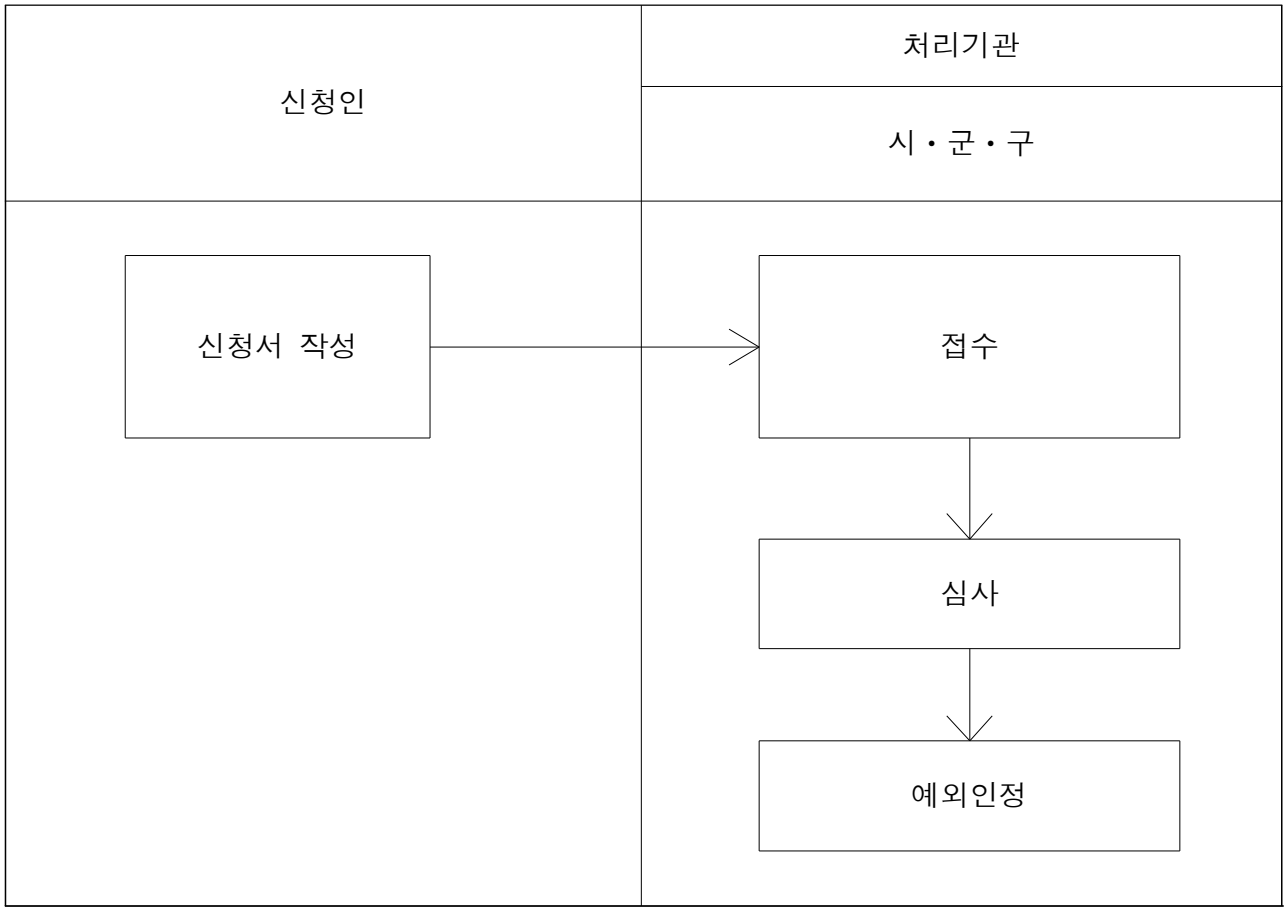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대장

일련번호	구분	개발·이용자	시설설치 및 관리 내용													원상복구 내용							확인			비고
		성명(주소)	위치(번지, 좌표)	용도	먹는물 사용여부	사용량(㎥/일)	준공일	표고(標高)(m)	깊이(m)	지름(mm)	취수계획량(㎥/일)	동력장치(마력)	토출관 안쪽 지름(mm)	펌프 설치 깊이(m)	양수능력(㎥/일)	이용기간(일)	불용공(不用孔) 발생일	발생원인	조치명령일	이행완료일	처리방법	원상복구 처리자	신고일	담당	계장	과장	

※ 구분란은 허가 또는 신고로 적습니다.

363㎜×258㎜(백상지 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조치명령 이행완료 보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보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보고내용	시설명	
	조치명령 완료내용	
	조치명령 완료일	
시공업체	업체명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제16조의3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5항·제3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보고인 첨부서류	1. 조치명령의 이행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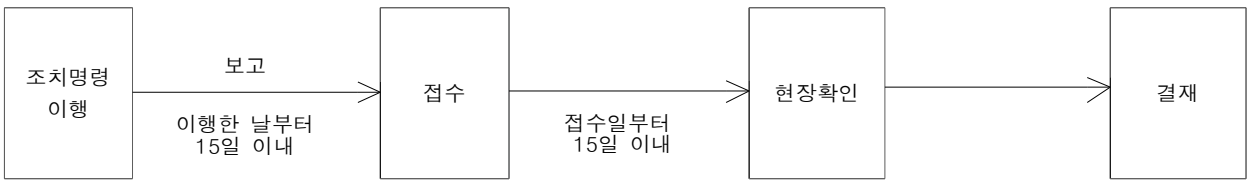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지하수오염 조치사항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④ 주소	

⑤ 지하수 오염사고발생 일시・장소	년 월 일 시 분(요일)
⑥ 사고원인	
⑦ 사고내용	
⑧ 지하수 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누출량	
⑨ 오염피해 우려지역과 수질측정 지점	
⑩ 오염사고 수습을 위한 각종 조치내용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신고인 첨부서류	1. 수질측정기록부 2. 지하수오염사고 발생위치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지적도 또는 임야도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⑤란은 사고가 발생한 일시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장소의 주소를 적습니다.
2. ⑥란은 지하수오염사고의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3. ⑦란은 지하수오염사고의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지하수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지하수오염물질의 종류, 농도 및 누출량을 적습니다.
5. ⑨란의 지하수오염사고 발생으로 오염피해우려지역과 지하수의 수질을 측정한 지점을 적습니다.
6. ⑩란은 지하수오염사고의 수습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민원실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수질측정기록부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수질측정기록부

작성자명: (서명 또는 인)

구분 \ 관측정 위치			상류지점		하류지점	
			①	①	②	③
측정일시						
지하수위(m)						
외관						
수질 측정 항목 및 수질 (mg/L)	일반 오염 물질	수소이온농도(pH)				
		총대장균군 (군수/100mL)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특정 유해 물질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로뮴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기타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				측정결과 종합의견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관측정 위치는 지하수 주 흐름방향의 상류지점, 하류지점의 관측정 위치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수질측정항목 중 기타란에는 검출가능 항목으로 추가 조사한 항목을 적습니다.
3. 수질측정방법 또는 수질측정기관란에는 관측정 설치자가 직접 측정한 경우에는 자가 측정으로,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명칭을 적습니다.
4. 측정 결과 종합의견란에는 수질측정 결과 기준 초과항목, 지하수위의 증감, 오염물질의 검출 또는 증가 등 특이사항에 대한 작성자의 의견을 적습니다.
5.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 제원(諸元: 시설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은 매분기별로 다음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도 작성합니다.

시설종류	설치연도	오염물질종류	규모(용량)	기 타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접수·처리기록부

연번	신청접수							시료채취 일시 통보					결재		비고
	접수 및 처리		신청인			관정정보		송신자		수신자					
	접수연월일	처리기한	성명 (법인명)	주소	전화번호	위치	허가(신고) 번호	직급 또는 직책	성명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통보 내용	담당자	결재자	

297㎜×210㎜[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

(앞쪽)

<table>
<tr><th colspan="6">지하수수질검사시료 채취확인서</th></tr>
<tr><td colspan="6">1. 시료 내용</td></tr>
<tr><td colspan="2">검사목적·근거</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지하수 용도</td><td colspan="2"></td><td>원수/정수 여부</td><td></td></tr>
<tr><td colspan="2">채취일</td><td colspan="2"></td><td>기타 사항</td><td></td></tr>
<tr><td rowspan="3">지하수 개발·이용자</td><td>상호 또는 명칭</td><td colspan="2"></td><td>허가/신고 번호</td><td></td></tr>
<tr><td>대표자 또는 성명(개인)</td><td colspan="4"></td></tr>
<tr><td>소재지 또는 주소(개인)</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위치</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6">2. 시료채취자</td></tr>
<tr><td>소속</td><td colspan="2"></td><td>이름</td><td colspan="2">(인)</td></tr>
</table>

148㎜×10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작성요령

1. 검사목적·근거란에는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른 정기 수질검사 등 검사의 목적 및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적습니다.
2. 지하수 용도란에는 먹는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또는 공업용수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3. 원수/정수 여부란에는 시료가 지하수 원수인 경우에는 “원수”로, 지하수 원수를 소독 등의 방법으로 정수 처리한 경우에는 “정수”로 적습니다.
4. 기타 사항란에는 수질기준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시료인 경우 “재검사”로 적는 등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습니다.
5. 허가/신고 번호란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의 허가번호 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증의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통보서

기관명

수신: 발신:

제목: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농·어업용수, 공업용수) 수질검사결과 통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합니다.

1. 시료 내용

접수 번호			접수일	
지하수 개발·이용자	상호 또는 명칭		허가/신고 번호	
	대표자 또는 성명(개인)			
	소재지 또는 주소(개인)	(전화번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위치				
검사목적·근거				
지하수 용도			원수/정수 여부	
시료채취자	소속		성명	

2. 수질검사 결과

(단위: mg/L)

검사항목	기준	검사 결과	검사항목	기준	검사 결과
종합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지하수수질검사 결과통보서

(앞쪽)

허가(신고) 번호	검사 목적·근거	원수/정수 여부	기타 (재검사 등)	지하수 개발·이용자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연월일			판정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								
				상호 또는 명칭	소재지 또는 주소	위치	용도	접수	검사	결과 통보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항목별 수질검사 결과

364mm×25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제 호

출입·조사 공무원증

사 진

3㎝×4㎝

성 명

시·군·구

60㎜×90㎜[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연하늘색)

(뒤쪽)

출입·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지하수법」 제21조에 따른 출입·조사 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지하수법」 제21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수질검사의 이행 여부, 지하수개발·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출입할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	
임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기술능력	총 명 (기술 분야별 명)
	시설·장비	※ 장비 중 시추/착정 장비는 모델명을 적습니다.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첨부서류	등록신청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변경등록신청	변경등록인 경우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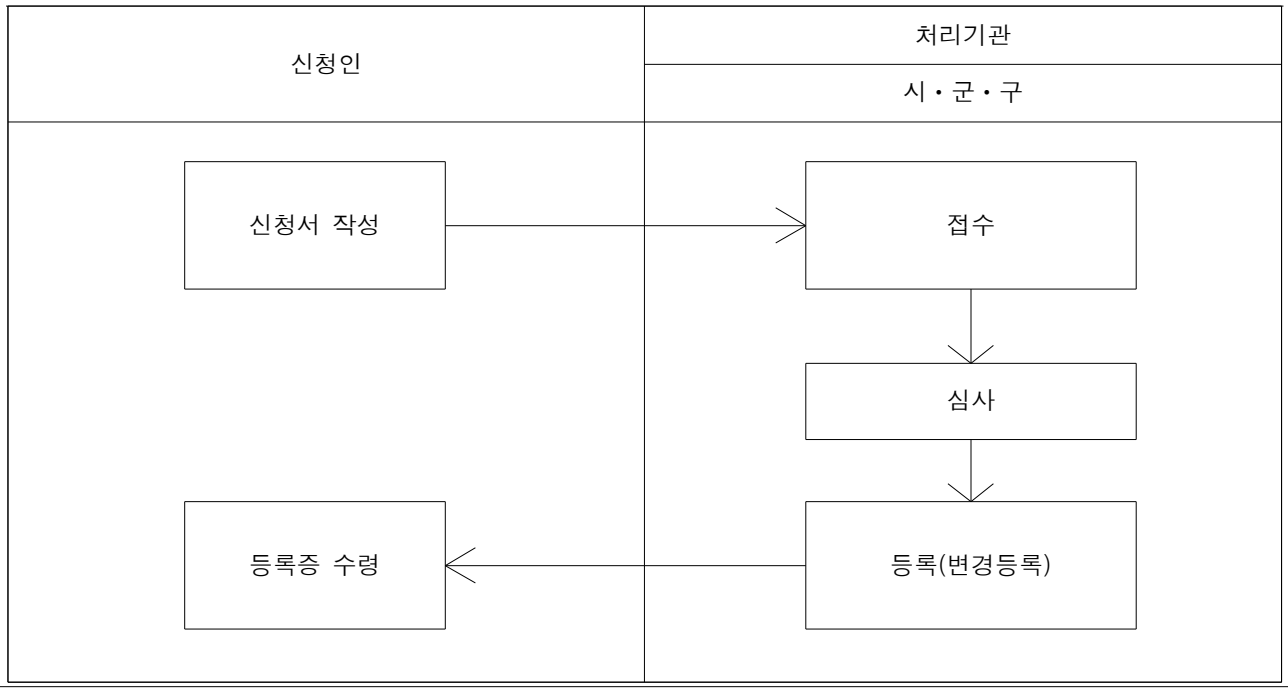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6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대장

일련번호	신청연월일	등록사항							행정처분사항	등록증 발급					비고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자본금(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기술능력	시설·장비(시추/착정장비는 모델명)		연월일	발급번호	결재			
												담당	계장	과장	

364㎜×257㎜[백상지 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록 조건		
등록 연월일		

「지하수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자 유의사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후 변경등록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허가·인가 대상시설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대상시설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한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에는 양도일·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명의 대여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결격사유(「지하수법」 제23조)에 해당하게 된 경우, 명의 대여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양도·양수 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양수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등록사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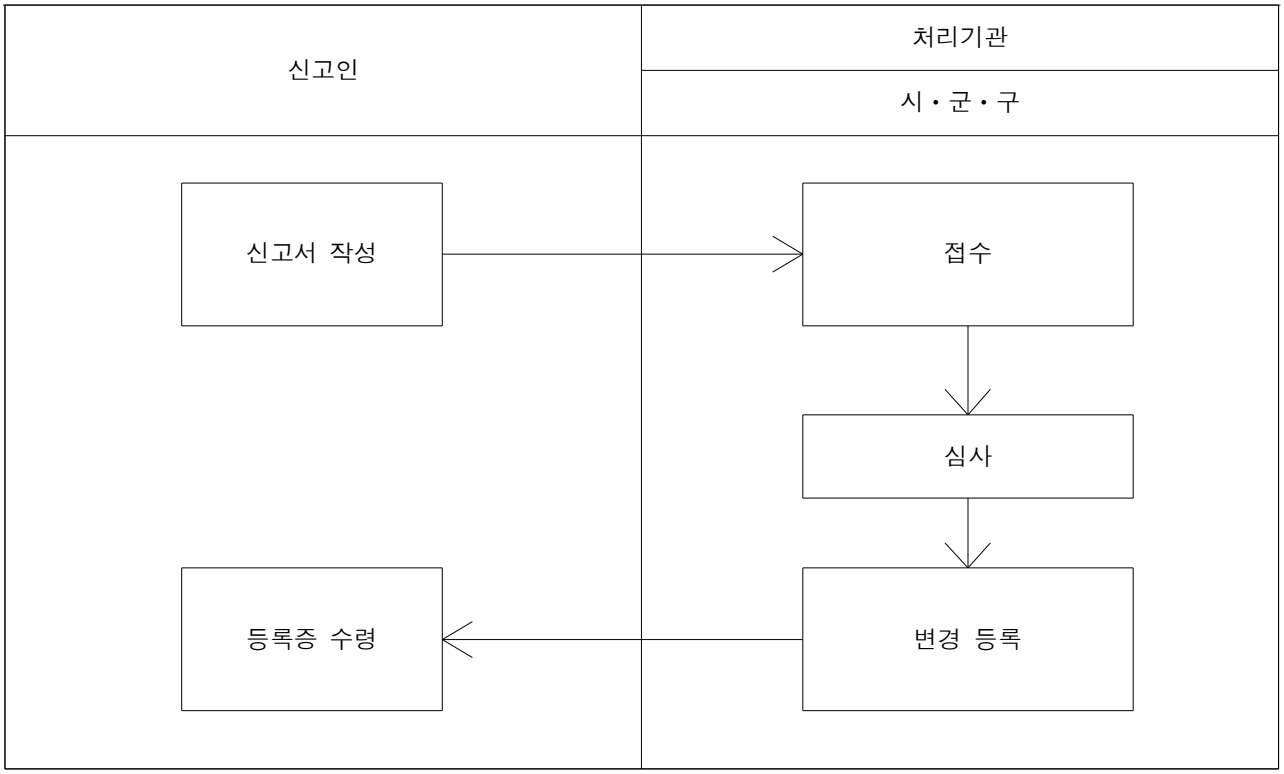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합병신고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합병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합병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사항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사유		

「지하수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합병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합병되는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되는 법인 (서명 또는 인)

합병 후 존속(설립) 법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재무상태표를 말합니다) 5.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7.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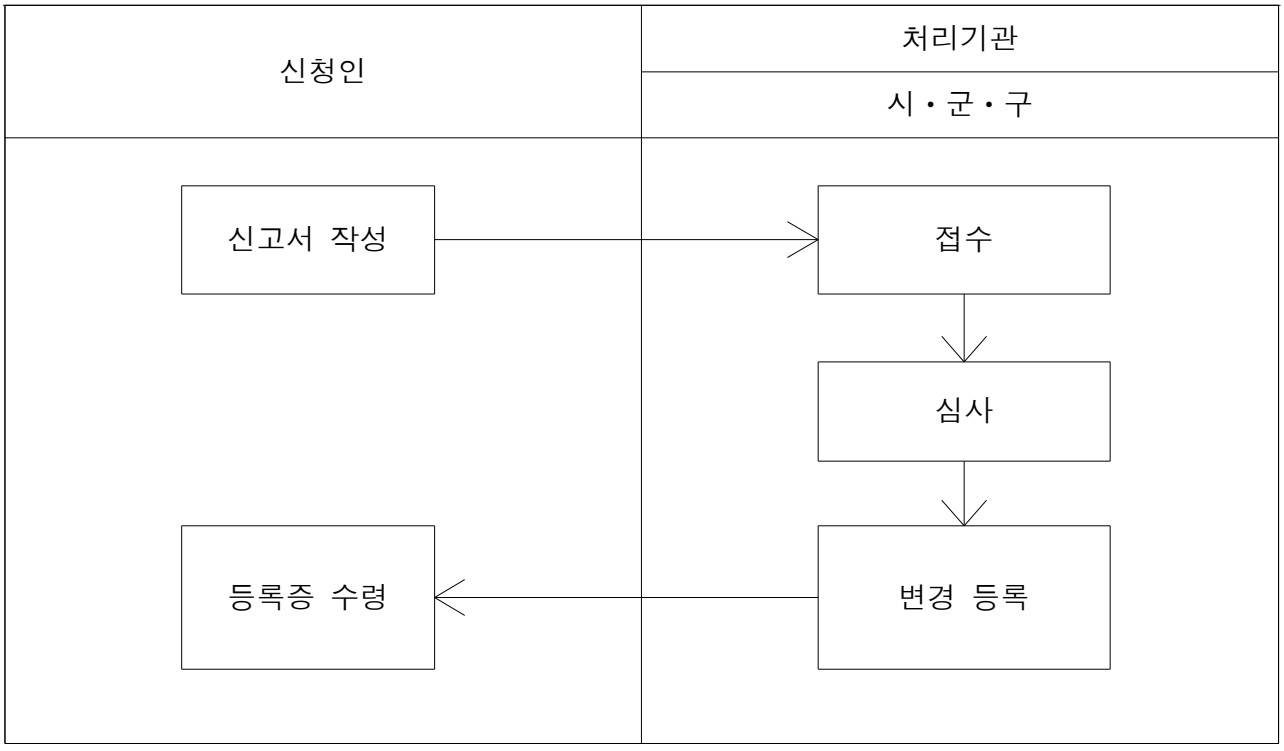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승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등록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지하수법」 제2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승계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승계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변경등록	→	등록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1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주된 사무소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임원		
기술능력		
시설・장비		
변경등록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등록 신청	1.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 등록: 5만원 •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등록: 4만5천원 • 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 등록: 4만5천원 • 변경등록: 2만7천원
	변경 등록신청	1. 별지 제53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 중 제2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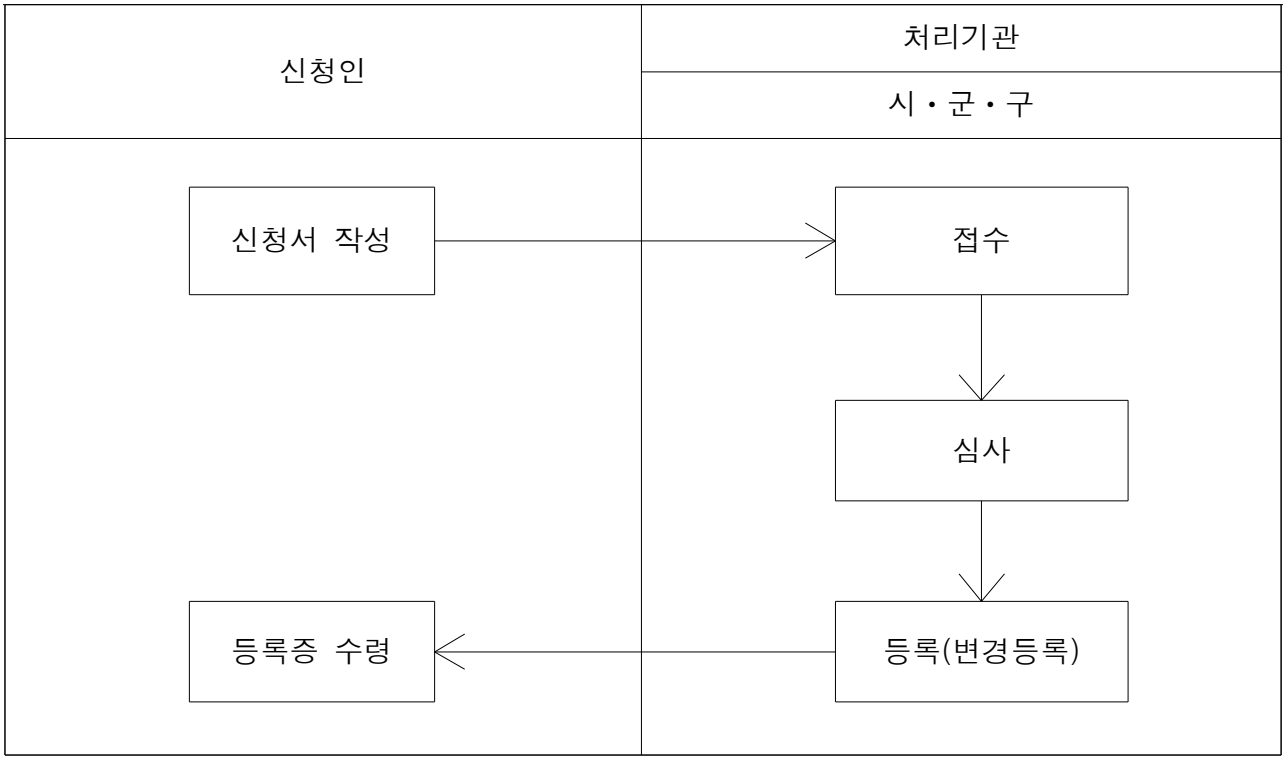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2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대장

일련 번호	신청 연월일	등록사항				시설·장비	행정 처분 사항	등록증 발급					비고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개인인 경우 주소)	기술 능력			연월일	발급 번호	결재			
										담당	계장	과장	

364㎜×257㎜[보존용지(2종) 70g/㎡]

등록번호 제 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증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3. 법인등록번호(개인인 경우 생년월일):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

5. 등록 조건:

「지하수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변경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연월일	내용	확인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유의사항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후 변경등록 등에 대한 주요 절차와 유의사항을 알려 드리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 사항 중 아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기술능력 및 시설·장비, 주된 사무소의 이전>

* 지하수조사전문기관의 대표자 변경은 변경등록에서 제외합니다.
*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에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명의 또는 등록증 대여의 상대방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

○ 「지하수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때
○ 「지하수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지하수영향조사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지하수법」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지하수법」 제28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 임명하였을 때는 제외합니다.
○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다른 자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하수영향조사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하수영향조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 이 유의사항은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 중 주요 사항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지하수정화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전문인력	총 명(기술분야별 명)	
시설・장비		
변경등록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하수정화업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자본 또는 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에는 지하수정화업 등록증과 위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	수수료 -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5만원 ・변경등록: 3만원 -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는 경우 ・등록: 4만5천원 ・변경등록: 2만7천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민원실		처리기관 (시・군・구)		필요시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210㎜×297㎜[백상지 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지하수정화업 등록대장

순번	신청 일자	등록사항				시설 · 장비	행정처 분사항	등록증발급					비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소재지 또는 주소	기술 인력			발급 일자	발급 번호	결재			
										담당	계장	과장	

297㎜×210㎜(백상지 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제 호

지하수정화업 등록증

신청인	상호 또는 명칭	
	법인의 대표자(개인인 경우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소재지 또는 주소 (전화번호:)	
등록 조건		

「지하수법」 제29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7호서식]

토지의 [ ]출입 [ ]사용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대상토지	위치		
	소유자(점유자) 성명	지목	현황
	주소		
출입(사용) 목적			
출입(사용) 내용			
출입시기 (사용기간)	. . . ~ . . .(일간)		

「지하수법」 제3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의 ([ ]출입 [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출입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출입증 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서식]

(앞쪽)

제 호

토지출입증

사 진

3㎝ × 4㎝

성 명

시·군·구

60㎜×90㎜[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연하늘색)

(뒤쪽)

토지출입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지하수에 관한 조사·정화·관측 또는 측정을 위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지하수법」 제31조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지하수에 관한 조사·정화·관측 또는 측정을 위해 해당 토지에 출입, 일시사용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

조사방문일지

<table>
<tr><td rowspan="3">조사방문 장소</td><td>상호 또는 명칭</td><td colspan="3"></td></tr>
<tr><td>법인의 대표자 (개인인 경우 성명)</td><td></td><td>법인등록번호 (개인인 경우 생년월일)</td><td></td></tr>
<tr><td>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개인인 경우 주소)</td><td colspan="3"></td></tr>
<tr><td>조사 일시</td><td colspan="4">년 월 일 : 부터 : 까지</td></tr>
<tr><td>조사 목적</td><td colspan="4"></td></tr>
<tr><td>업무 수행 내용</td><td colspan="4"></td></tr>
<tr><td>지시 또는 특기사항</td><td colspan="4"></td></tr>
<tr><td>조사공무원</td><td colspan="4">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소속: 직급: 성명: (서명)</td></tr>
<tr><td>조사를 받는 사람</td><td colspan="4">소속: 직위: 성명: (서명)</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제 호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 조사 공무원증

성 명

시·군·구

60㎜×90㎜[보존용지(1종) 120g/㎡]

(바탕색: 연하늘색)

(뒤쪽)

조사 공무원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지하수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1. 「지하수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이 증표를 소지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등의 관계자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등의 영업실적 등 보고서

제출인	상호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개인인 경우 성명	업종 ※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주소	전화번호

1. 영업실적

연도	구분	영업실적(계약건수)	비용(원)	사업 위치	사업내용
					ex) 시공업(관정개발, 사후관리 등)

2.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

분야	성명	생년월일	기술능력		교육이수		입사연월일	퇴사연월일
			기술자격	자격증번호	과정명	기간		

3. 시설·장비 보유현황

시설·장비명	규격 및 모델번호*	장비 고유번호*	임차 또는 자기소유	임차인 경우		보관장소	비고
				임차일	임차종료일		

*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첨부서류	1.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방법

1.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의 분야란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등에 따라 적습니다.
2. 기술능력 및 기술인력의 교육 이수현황의 입사연월일란에는 처음 근무일을 적고, 퇴사연월일란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4대보험 상실일)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시·군·구 등의 영업실적 등 종합보고

행정기관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영업실적 등 통보**

「지하수법」 제3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및 지하수정화업자에 대한 영업실적 등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업종	대상 업체 수	영업실적(건수, 금액)		위반현황 (건수)				처분현황(건수)		
		0000년	0000년	기술 인력	시설·장비	교육 이수	기타	과태료	고발	기타

붙임: 업체별 세부 현황자료 1부.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업체별 영업실적 등 세부현황 자료

1. 지하수 개발 · 이용 시공업자

업종	업체명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기술인력		교육 이수	시설 · 장비		영업실적			위반사항
				인원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임차/ 자가	적합/ 부적합	건수	비용	주요내용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업종	업체명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기술인력		교육 이수	시설 · 장비		영업실적			위반사항
				인원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임차/ 자가	적합/ 부적합	건수	비용	주요내용	

3. 지하수정화업자

업종	업체명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기술인력		교육 이수	시설 · 장비		영업실적			위반사항
				인원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임차/ 자가	적합/ 부적합	건수	비용	주요 내용	

210㎜×297㎜[백상지(80g/㎡)]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 되었던 것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으로 통합하는 한편,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 물 공급 취약지역 지원 대상 지역, 지하수의 국가측정망 및 보조측정망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